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구축 및 운영 실무에 대한 이해

-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를 중심으로..

2019.11.25

OCTASolution

The Global Compliance Solution Leader



CONTENTS

- 01 회사 소개
- 02 규제 동향 및 레그테크
- 03 자금세탁방지 사고 사례
- 04 RB AML-PRISM™ 소개
- 05 옥타솔루션 구축 방법론 - OIM
- 06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07 FATF 규제대응 이슈, 현안 및 대응 전략
- 08 옥타솔루션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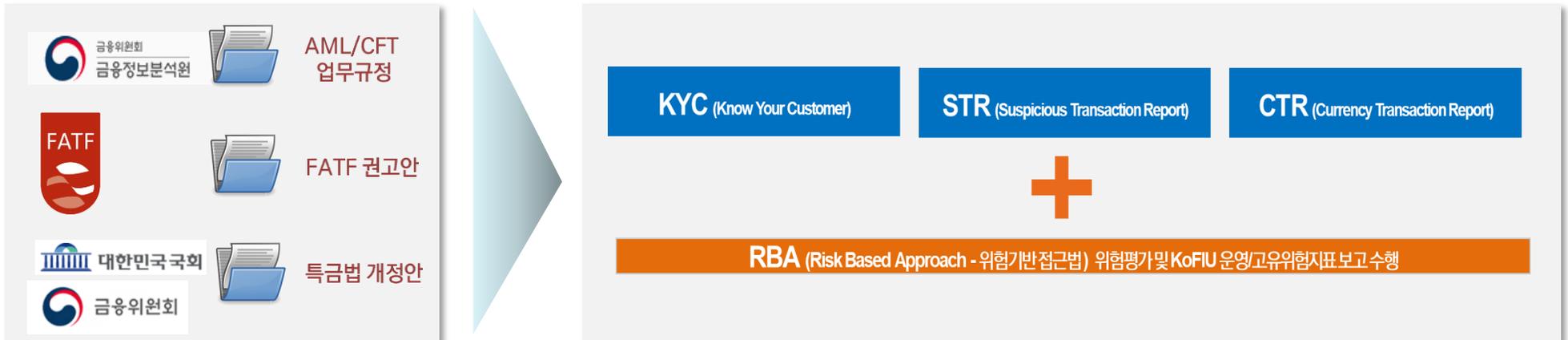


위험 기반 자금세탁방지 개요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외의 제재 리스크가 급증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중요성 및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증가되며, 규제의 방향성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19년 6월 2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취급업자(VASP) 대상 자금세탁방지 가이드인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및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금융회사 AML/CFT 위험 기반접근법 처리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BA 제도를 도입한 이유

AML
(자금세탁방지)

RBA
(위험기반접근)

미래

-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분석, 보고 등을 통해 동일/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1. RBA 위험평가 시스템은 위험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임.

인식 ▶ 분석 ▶ 평가 ▶ 잔여위험 도출 ▶ 경감활동 ▶ 모니터링 ▶ 성과관리 ▶ KoFIU 지표 관리 ▶ KoFIU 지표보고 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위험을 줄여 나가기 위한 것임.

2. KoFIU 운영위험지표와 고유위험지표 보고를 통해 감독기관이 상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임.

자가평가지표보고 ▶ 분석 ▶ 의무 이행 수준 평가 및 관리 ▶ 지표값 실사 검증 ▶ 확인 및 감독 ▶ 이행 수준 지속적 모니터링

참 고 : FATF 권고사항 -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확인), 분석(평가, 이해) 하는 것
-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
: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조치(Risk mitigation)들이 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
-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2년 2월 FATF 권고사항(FATF Recommendations,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개정 채택
: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은 FATF 40개 권고사항 중 1번으로 채택된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임

AML/CFT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RBA) 처리 기준

II 위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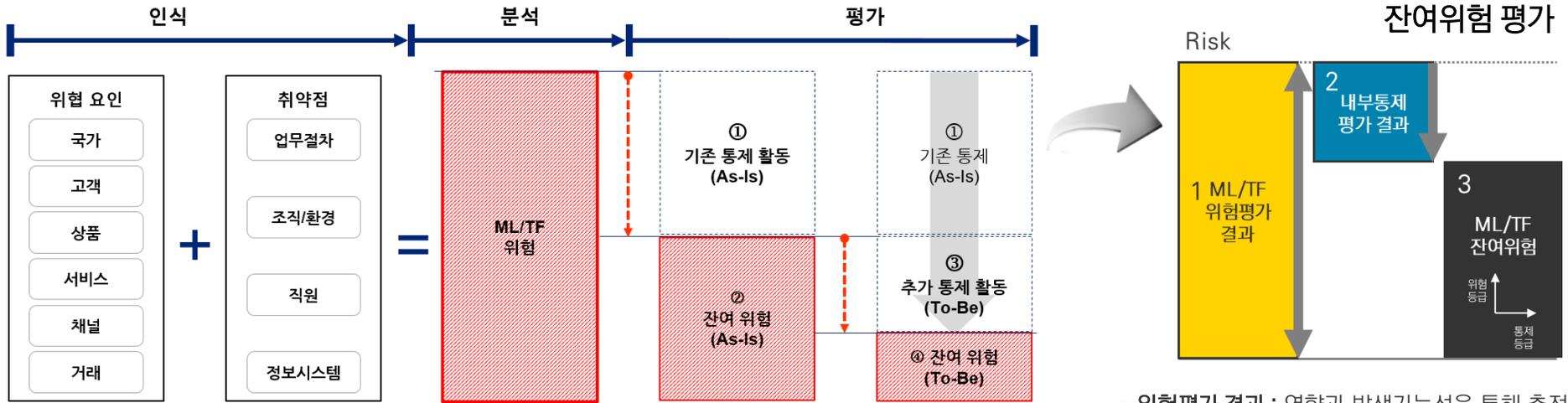
1 수행원칙

- 위험평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등에 대하여 식별, 분석,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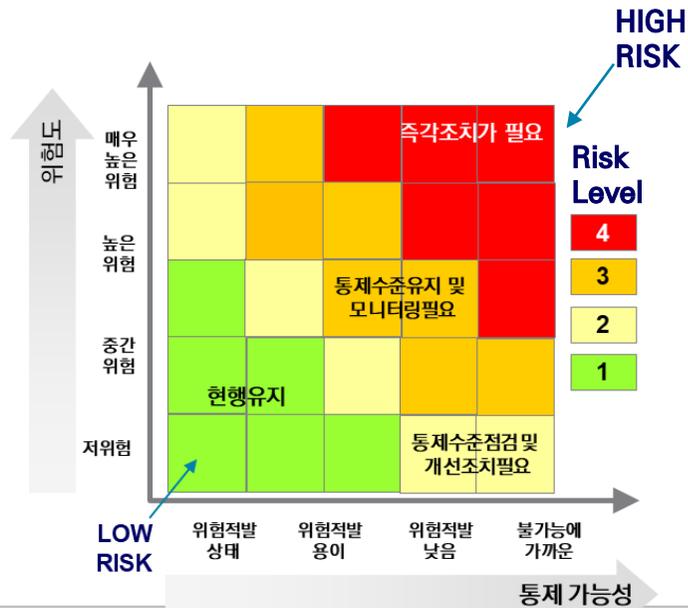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KoFIU))



RBA - 위험평가 체계 개념도



- 위험평가 결과 : 영향과 발생가능성을 통해 측정된 Risk Level
- 내부통제 평가 결과 :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 수준 평가를 통한 통제의 유효등급



High Risk -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며 유관부서의 추가 검토 및 즉시적인 개선활동 수행 필요

Moderate Risk - 통제활동의 보완 또는 추가적인 통제 수립 필요

통제활동 개선 대상

Significant Risk -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며 대응방안 수립 필요

Low Risk -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일반적인 관리 수행

모니터링 대상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3대 법!!”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행위 예방을 위한 법률

- ✓ 금융정보분석원(KoFIU) 설치
-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 ✓ 고액현금거래 보고 (06.1)
- ✓ 고객확인제도
- ✓ 내부보고체계 구축
- ✓ 법집행기관에 자금세탁관련 정보제공
- ✓ 정보누설 금지 등 금융비밀보장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제정/정비
운영감독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기관



자금세탁방지 관련 3대 법률

범죄수익
규제법

공중협박
조달금지법

• 중대 범죄를 조장하는 자금세탁억제를 위한 법률

- ✓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 ✓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44종을 규정
-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 ✓ 범죄사실 확인 시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여

• 테러관련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 ✓ 공중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정함
-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
- ✓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과태료 항목 및 금액

위반 행위	위반행위 설명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2018. 이전	2018. 2월	2019. 7월(안)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u>고객확인 의무/실제소유자확인(CDD) 미수행</u>	1,000 이하 (1,000)	800 (1,000)	1,800 (3,000)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u>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미수행</u>		1,000 (1,000)	6,000 (10,000)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u>의심거래보고(STR) 미보고</u>		1,000 (1,000)	1,800 (3,000)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u>고액현금거래보고(CTR) 미보고</u>		800 (1,000)	900 (3,000)
금융회사등이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u>금융당국의 지시검사에 따른 조치를 거부방해키피 및 미이행</u>		1,000 (1,000)	10,000 (10,000)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u>내부통제 미수립</u>	신설	6,000 (10,000)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u>AML 관련 자료 및 정보 미보존</u>	신설	1,800 (3,000)	



01

회사 소개



옥타솔루션 - 개요

“금융 업무·금융 규제·최신 IT 기술 역량 보유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회사 개요 및 핵심역량

- ✓ 주요사업분야: 솔루션개발 및 판매, 업무컨설팅, 시스템구축
- ✓ 사업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22길21 코오롱디지털타워
- ✓ 사업종사기간: 7년 (2012년09월~ 현재)
- ✓ 자본금: 9.9억 (2019년 8월 증자)
- ✓ 대표자: 박만성 **금융감독원 레그테크 포럼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입법건의 TF 자문위원
한국경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 위원

주요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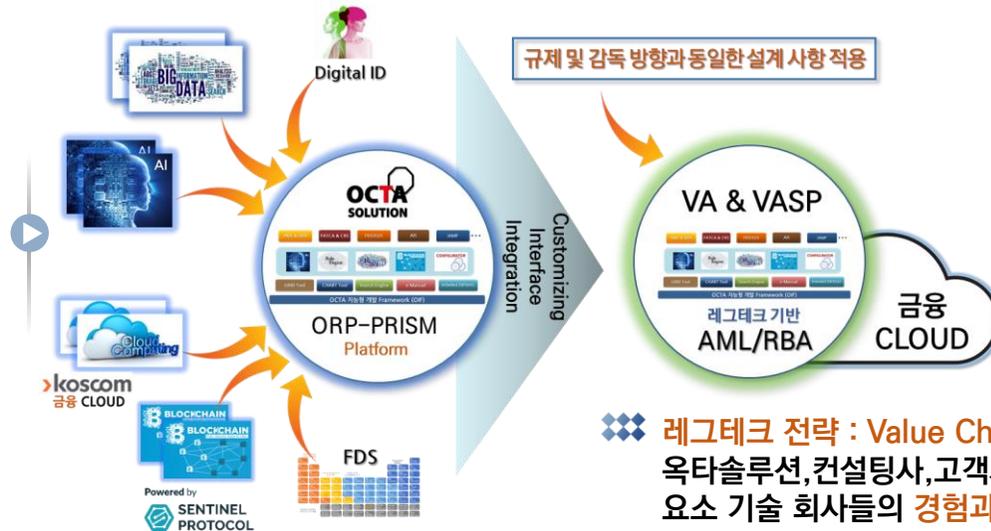
FATCA/CRS • 해외금융계좌신고 • 다자간금융정보교환	AML/RBA • 자금세탁방지 • 위험기반평가 및 지표관리	FDS/EUS • 보험 사기적발 • 보험인수심사	AIS • 감사정보시스템 • 청탁금지시스템	e-Manual 지능형전자매뉴얼 (3D 인체 모형을 통한 보험 심사 등)
FA-PRISM CRS-PRISM	AML-PRISM RBA-PRISM cryptoAML-PRISM	FDS-PRISM EUS-PRISM	AIS-PRISM ABS-PRISM	eM-PRISM

GRID Tool CHART Tool Search Engine Rule Engine Framework

ORP (OCTA RegTech Platform) TM

고객에게 드리는 가치

❖ 핵심 역량



❖ 핵심 가치



❖ 레그테크 전략 : Value Chain 옥타솔루션, 컨설팅사, 고객사 및 요소 기술 회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여 내재화





레그테크 리더십

OCTA Solution은 레그테크 기반의 금융 준법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2017년부터 **금융감독원 레그테크 포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VA & VASP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그테크 (RegTech) 기반 금융 준법솔루션 전문 기업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성

- 2017.03.16 금감원 레그테크 자문위원 위촉
- 2017.10.17 금감원 레그테크 세미나 주제 발표
- 2018.02.22 인터넷진흥원 레그테크 강연
- 2018.03.23 금감원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자문위원 위촉
- 2018.05.25 인공지능과 윤리 및 자금세탁방지 세미나 강연
- 2019.05.31 시사저널 자금세탁방지 세미나 강연
- 2018.10.06 금감원 레그테크 포럼 주제 발표
- 2018.03.25 금감원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자문위원 재위촉
- 2019.05.23 금감원 Korea FinTech Week 주제 발표
- 2019.06.26 인터넷 진흥원 자금세탁방지과 레그테크 강연
- 2019.07.05 벤처투자협회 VC 전문성 강화 교육
- 2019.09.18 대부업 AML 세미나 개최
- 2019.10.15 금감원 레그테크 포럼 주제 발표
- 2019.11.05 핀테크협회 소액해외송금업 솔루션 설명회
- 2019.11.18 여신금융협회 솔루션 설명회

- 2018.03.16 핀테크 및 VASP 자금세탁방지 세미나 개최
- 2019.05.23 Korea FinTech Week cryptoAML-PRISM 발표
- 2019.06.19 한국경제 가상자산거래소 평가 위원 위촉
- 2019.07.04 옥타솔루션 주최 VASP Meet UP 개최
"FATF 가이드 준수를 위한 VASP AML 대응 방안"
업비트 등 35개 거래소 50여명 참석
- 2019.07.09 한국블록체인협동조합 창립회원
- 2019.10.18 블록체인 서울 세미나 발표
- 2019.11.14 부산시 블록체인 비즈니스 성공전략 컨퍼런스 발표
- 2019.11.19 B. Capitalist 강연



Reg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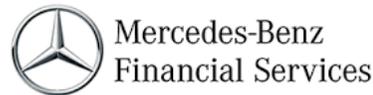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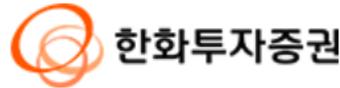
(Regulatory Technology)

레그테크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규제에 업종 맞춤형, 비용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임.





주요 고객 및 사업 실적



BMW Financial Services

VASP



옥타솔루션의 제품에는 옥타솔루션과 컨설팅파트너 및 다수 고객사의 자금세탁방지 경험과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는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02

규제 동향 및 레그테크



레그테크의 탄생: 금융 규제 대응 첨단 IT 기술

기존 금융기관에 더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자산규모 500억 이상의 대부업자, P2P Loan, 가상자산취급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골동품상, 미술품상, 경매업자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DNFBP)**들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종 맞춤형, 비용 효율적인 규제대응을 지원하는 레그테크 산업**이 시장 Needs에 의하여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신금융 서비스(핀테크)의 확산, 금융 거래의 국제화로 **금융 범죄 노출 위험 급증**

금융 거래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감시**해야 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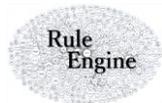
새로운 **규제/규정 지속적 증가** 및 기존 규제의 **빈번한 변경 발생**

감독 기관의 이제까지 없었던 고강도 규제에 따른 **징벌적 벌금 부과** 및 **폭주하는 규제 관련 보고서 요구**

FinTech 사업자 및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보석상, 미술상, e-Commerce 등

FinTech사를 위한 **업종 맞춤형, 비용 효율적 규제 대응 솔루션** 필요성 부각



신 개념의 '금융 규제 대응 업무'의 혁신 필요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 금융 규제 대응 신 IT 기술)의 탄생
기술, 규제, 금융서비스, FinTech를 상호 연결하여, 각각의 강점을 살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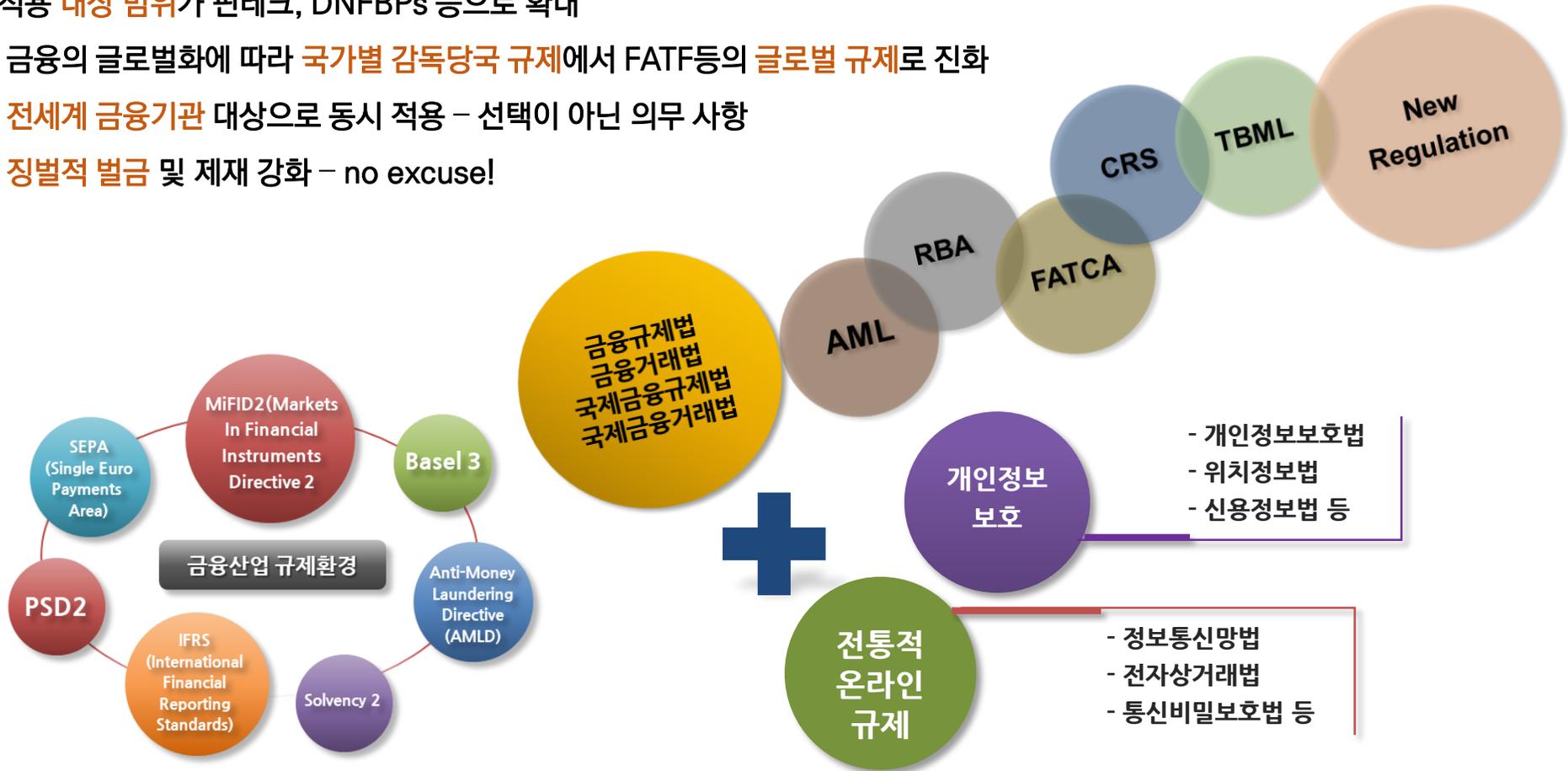
레그테크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규제에 **업종 맞춤형, 비용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임.





금융업 규제 동향

- 전통적인 금융업 규제에 더하여 **신규 규제/규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변경
- 적용 **대상 범위**가 핀테크, DNFBPs 등으로 확대
-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별 감독당국 규제**에서 FATF등의 **글로벌 규제**로 진화
- **전세계 금융기관** 대상으로 **동시 적용** -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
- **징벌적 벌금** 및 제재 강화 - no excuse!



2019년 7월 1일부로 '특금법(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 !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특이점

- 한국 자금세탁방지는 주로 혐의거래추출 및 WLF(Watch List Filtering)에 주력
- 전세계적으로는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출현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로 **고객 위험평가(Digital ID)** 및 그에 따른 초기 대응(**eKYC**)이 점점 더 중요해 짐.
- 해커 및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고객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FDS가 자금세탁방지의 영역에 추가**되고 있음.
- 대형 금융사고의 경우 내부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종업원 위험 평가(KYE)** 및 '**내부통제**'도 중요해 짐.
- 2019.06.21일에 발표된 **FATF의 VA & VASP**를 위한 권고안은 **RBA (위험기반접근)**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위험 유형별 우선순위와 비중이 아래와 같이 변해 가고 있음.



- 외국(주로 미국) 금융 감독기관에 의한 해외 지점 자금세탁방지 이행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국제 기준 및 동향에 주목해야 함
- 위 표는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관점을 반영한 것임.
- AML 준수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RegTech을 활용한 신 준법대응 솔루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위험 기반 자금세탁방지 최근 동향

■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 2019년 7월 ~ 2020년 상반기까지 진행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임.

■ 기존 금융기관 외에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가 AML 규제에 대응해야 하고, 그외 기 적용 중인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대부분의 핀테크 사업자 및 DNFBPs(비금융전문직종사자)가 AML 규제 준수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고	2018.9.14.(금) 10:00	배포	2018.9.14(금)
책임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성은(02-2100-1730)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02-2100-172) 심지원 사무관 (02-2100-172) 유미리 사무관 (02-2100-173)

제 목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 (19.1월부터 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용어②}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FATF 상호평가 수검국 84%가 “강화된 후속점검” 또는 “ICRG 점검절차” 대상

구분	국가	후속점검 주기
정규 후속점검 (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3국)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국)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절차 (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국)	4개월(매 FATF 총회시)





03

자금세탁 관련 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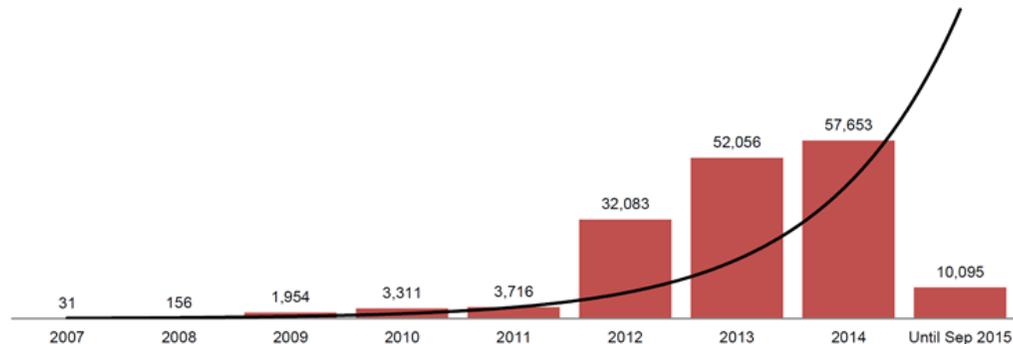


징벌적 규제 Penalty 및 Settlement 비용

-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금융 규제 미준수로 금융기관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2012년 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4년 기준 : USD 57B

Fines, Penalties & Settlements by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 Million) (2007-2015)



〈출처 : Financial times , 2016〉

 BNP PARIBAS \$8.9bn Location: France Year of fine: 2014 Sanctioned Countries: Cuba, Iran, Sudan	 HSBC \$1.9bn Location: UK Year of fine: 2012 Sanctioned Countries: Burma, Cuba, Iran, Libya, Sudan	 Standard Chartered \$667m Location: UK Year of fine: 2012 Sanctioned Countries: Burma, Iran, Libya, Sudan	 ING \$619m Location: Netherlands Year of fine: 2012 Sanctioned Countries: Burma, Cuba, Iran, Libya, Sudan	 CREDIT SUISSE \$536m Location: Switzerland Year of fine: 2009 Sanctioned Countries: Iran
 ABN-AMRO \$500m Location: Netherlands, UK Year of fine: 2010 Sanctioned Countries: Cuba, Iran, Libya, Sudan	 BARCLAYS \$298m Location: UK Year of fine: 2009 Sanctioned Countries: Burma, Cuba, Iran, Libya, Sudan	 clearstream \$152m Location: Germany Year of fine: 2014 Sanctioned Countries: Iran	 RBS \$100m Location: UK Year of fine: 2013 Sanctioned Countries: Burma, Cuba, Iran, Sudan	 J.P.Morgan \$88.3m Location: US Year of fine: 2011 Sanctioned Countries: Cuba, Iran, Sudan

-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지사도 벌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NH농협은행 : 120억원 벌금

2017년 IBK기업은행 : 벌금 협상 중



미국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자금세탁방지 비상걸린 은행 – 미국발 경고등에 ‘화들짝’

한국금융 2019-05-15 정선은 기자

http://cnews.ftimes.com/html/view.php?ud=201905150645397274179ad43907_18

미국 금융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 점포 자금세탁방지(AML)에 높은 잣대를 내밀면서 은행권이 인력 보강과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기 전에 감독 당국의 기준에 맞추려는 것인데 전문 인력의 고액 연봉, 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대형 은행에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거래한 사실로 한화로 **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받았다. HSBC도 같은 이유로 **2조원대의 벌금**을 내야 했다... **중략**...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2017년 뉴욕금융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이어 신한, 하나 등 주요 진출 은행들의 점포도 미국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불륜을 작지만 기축통화를 취급하는 만큼 대표성이 큰 국가다. 현지 법인을 가진 은행들은 **"연간 점포 순익을 뛰어넘는 개선 비용이 부과되고 전체 인원 중 대다수를 컴플라이언스 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우려가 제기된 점 등도 위축 요소였다.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 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는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국내 영업을 주력이다보니 국가 리스크 콘트롤 프레임워크를 갖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잘 모르기도 했다"며 "본점 차원에서 해외 지점에 거버넌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P Morgan 준법인력 13,000명 vs 국내 준법업무 1년 이상 유경험자 수는?





최근 징벌적 규제 Penalty 사례

ABLV Bank, AS (2019.2.16)



- 라트비아 민간은행 중 최대, 전체 3위 은행 (자산규모 약 5조원, 38억 5천만 유로)
- 북한 탄도미사일 자금조달 또는 수출을 포함한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연루
-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 파산
- 마카오 BDA, 중국 단둥은행 (→ 파산) 제재 방식

중국 농업은행 (2016.11월)



- 2억 1,500만 달러 (약 2,460억원) 벌금 합의
- 중국 3위 규모 국영은행
- 미얀마 반군 자금 모금에 이용
- 러시아-중동기업 대규모 달러 거래 STR 미보고 등

ING Bank (2018.9월)



- 7억 7,500만 유로 (약 1조원) 과징금 합의
- 2010~2016까지 수익유로 자금세탁방조혐의
- STR 미보고, 오히려 금융범죄 지원으로 CDD 위반

대만 메가뱅크 (2016.8월)



- 1억 8,000만 달러 (약 2,060억원) 벌금 합의
- 대만 최대 은행
- 뉴욕금융감독청 (NYDFS) 실사 시 지적
 - **STR 미보고 사유 기록 보존의무 위반**
 - **AML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답변 미흡**
- 대만 FSC 별도 제재
 - 지주사 회장 자격 박탈, 본점 행장, 부행장, 감사부장, 준법부장, 뉴욕지점장 해임.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2018.11월)



- 13억 4,000만 달러 (약 1조 6,410억원) 벌금 합의
- 프랑스 2대은행
- 미국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수단, 쿠바, 리비아 등과 금융거래 혐의
- AML 위반 혐의 9,500만 달러 (약 1,092억원) 추가 벌금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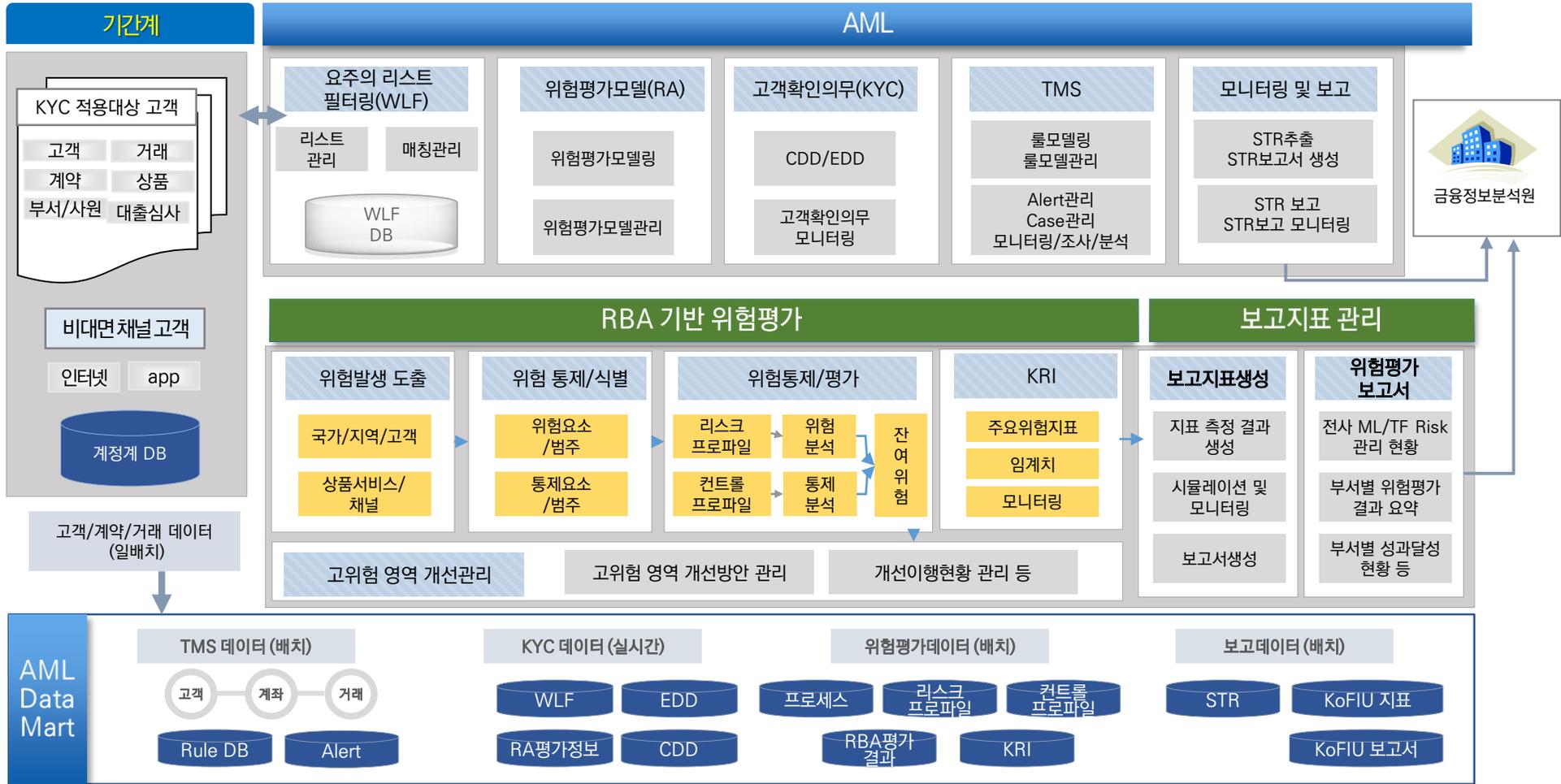


04

RB AML-PRISM™ & **crypto**AML-PRISM™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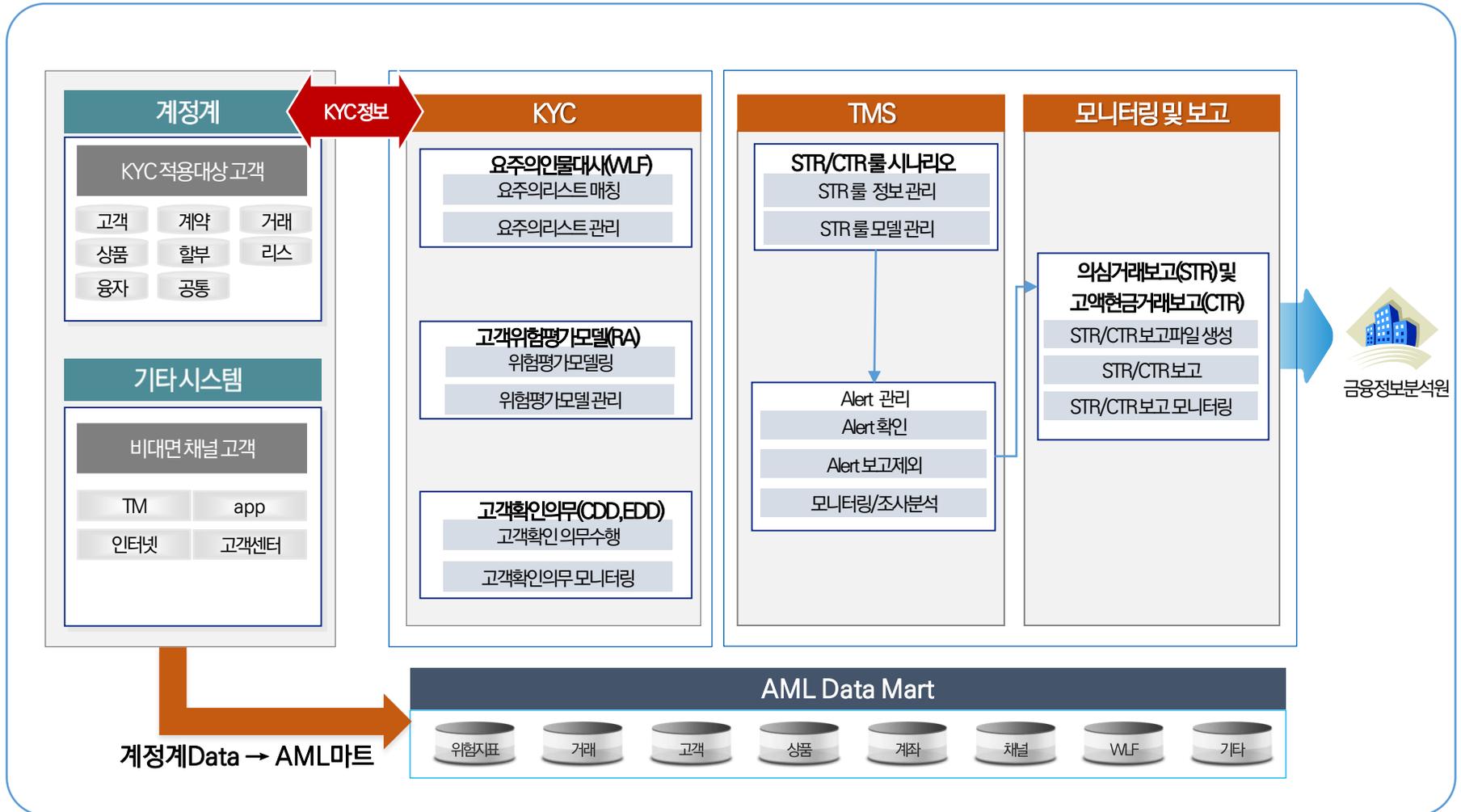
AML/RBA 시스템 구성도





AML : 시스템 구성도

AML 시스템은 Watch List Filtering, RA(위험평가), 고객정보확인(CDD,EDD), STR보고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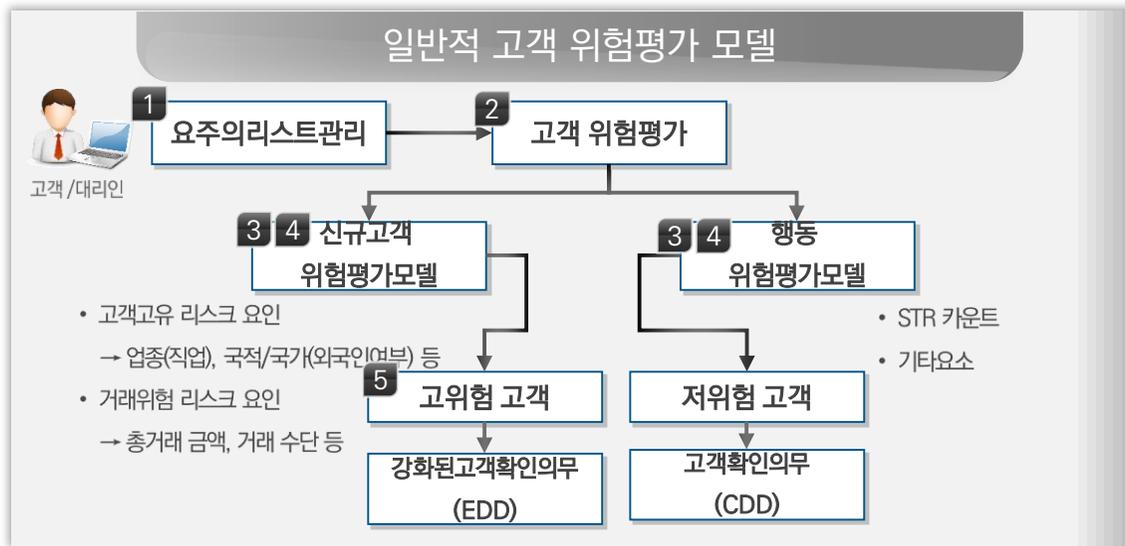


RA : Risk Assessment, CDD : Customer Due Diligence, EDD : Enhanced Due Diligence,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AML : 고객 프로파일 및 RA 모델

운영중인 기간제 KYC 고객 프로파일 항목 신설 및 신규 도입되는 RBA대비 기존 모델의 Risk Factor 완전성을 제고하여, 주요 이슈 사항을 파악한 후 해당 이슈에 대한 TO-BE 개선안을 수행합니다.



고객위험 평가모델 개선방향

1. 요주의리스트 관리 최적화
→ 자동업로드, 자가관리 방안 등 제시
2. 당면 고위험 기준 적용
→ 고위험 직업, 상품, 국적 등 EDD 대상 필터링 기준 적용
3. 신규 위험요소 평가에 반영
→ 신상품 위험평가 솔루션에 반영
4. 평가항목 가중치 최적화
→ 시뮬레이션 기능 (자체 파라미터 수정 가능)
5. 고위험비율 최적화
→ 금감원 권고비율 적용

고객별 CDD/EDD정보 추가

-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성
- 필수정보, 추가정보, 필수서류, 추가서류 관리 추가
- 화면 구성 및 기존 CDD/EDD정보 처리 개선

STR보고자의 EDD추가

- 의심 가는 거래자 조회
- STR거래자의 경우 EDD 처리

RBA기반의
KYC 항목신설
(예)

거래거절 실적관리 신규

- 거래 거절 고객의 별도 관리
- 거래거절정보 DB 추가
- 거래거절정보 조회 처리

재 이행관리/오류입력 정정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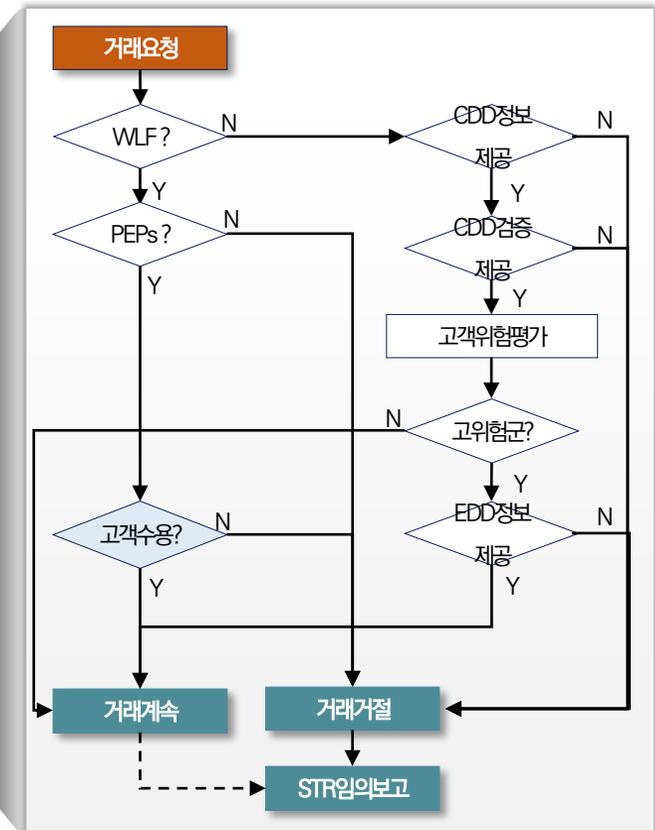
- CDD 재이행을 위한 기간 주기 관리
- 대리인으로부터 입수된 정보의 오류가 있을 경우 데이터 수정 처리



AML : Watch List 관리

고객이 요주의 대상일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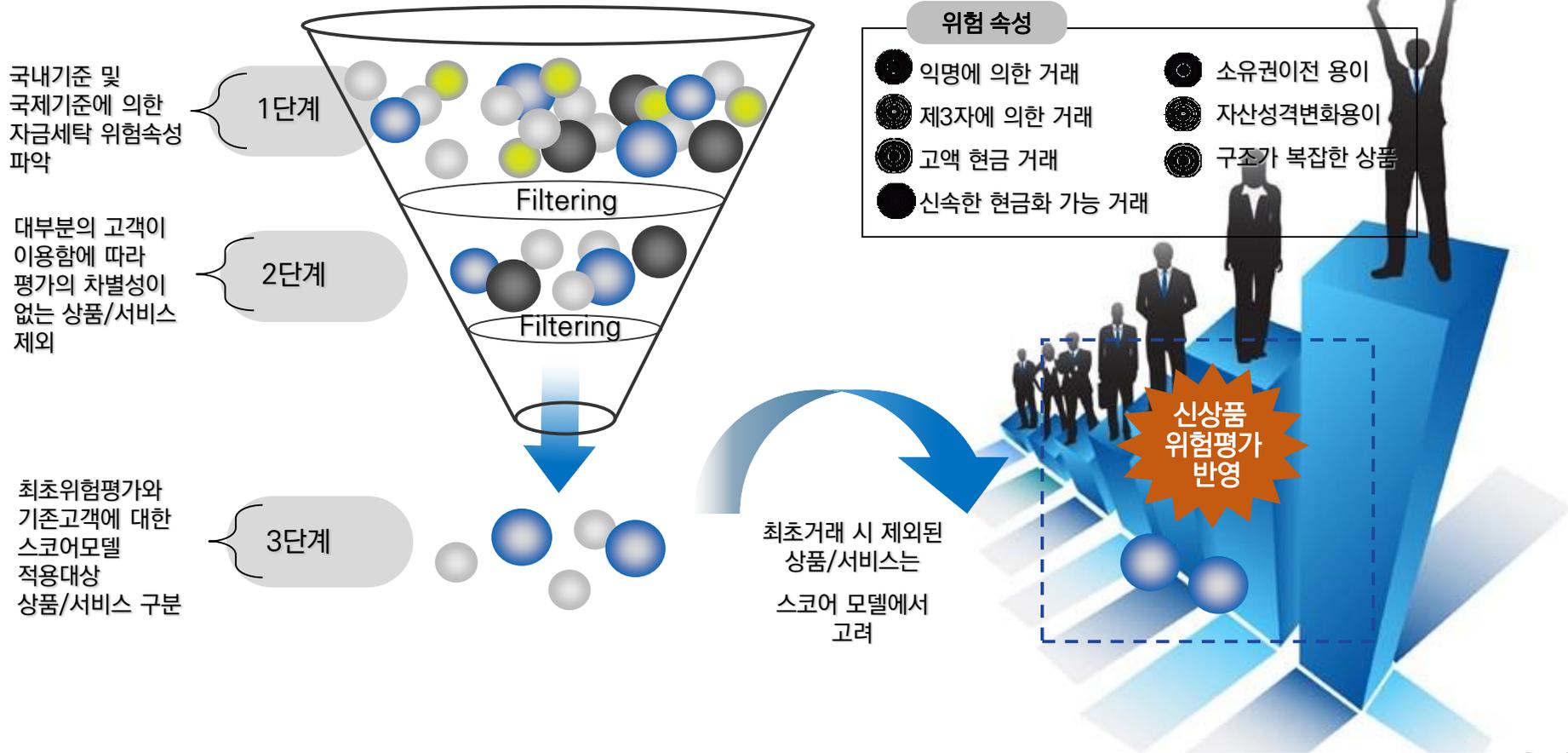
구분		대응절차			전결절차		
		거래거절	승인 후 수용 여부	STR입의보고 검토	1차 결재 (조사, 검토)	2차 결재	3차 결재
Watch List 대상자	OFAC SDNs 제한자	○	✗	○	컴플팀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FATF 비협조 국가	○	✗	○	컴플팀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UN 테러리스트	○	✗	○	컴플팀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	○	컴플팀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PEPs (정치적주요인물)	△	○	○	컴플팀	컴플라이언스 팀장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CDD 정보제공 거부, 필수 검증사항 불일치	신규	○	✗	✗	지점장/컴플팀	컴플라이언스 팀장	
	기존	○	✗	○	지점장/컴플팀	컴플라이언스 팀장	
EDD 정보제공 거부, 필수 검증사항 불일치	신규	○	✗	○	지점장/컴플팀	컴플라이언스 팀장	
	기존	○	✗	○	지점장/컴플팀	컴플라이언스 팀장	





AML : 신상품/서비스 자금세탁방지 위험 평가

신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AML : STR 모델 고도화 및 유사 유형 통합 보고

기존 운영중인 혐의거래 모니터링 룰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유형이 비슷한 의심스러운 거래는 통합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현 합니다.

To-Be Rule 혐의거래 모니터링 룰 개선 방향성

- 1 룰 최적화**
 - 과도한 Alert 발생 룰: Alert은 많으나 STR 보고율 낮은 룰 임계치 강화
 - Alert 미발생 룰: Alert이 발생하지 않는 룰 추출 기준 개선
- 2 룰 삭제**
 - 미보고 룰: Alert이 발생하지 않거나, Alert은 발생하지만 STR 보고가 발생하지 않는 룰 삭제 또는 개선
- 3 신규 룰 추가**
 - 기존 룰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거래에 대한 신규 룰 정의
 - 감독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룰 정의
 - 기존 거래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된 업무영역에 대한 신규 룰 정의
- 4 보고서 유형이 비슷한 룰 통합보고**
 - 혐의거래 1 (유형 A) ⊕ 혐의거래 2 (유형 A) = 혐의거래 12 (유형 A)

업권별 Rule Base TMS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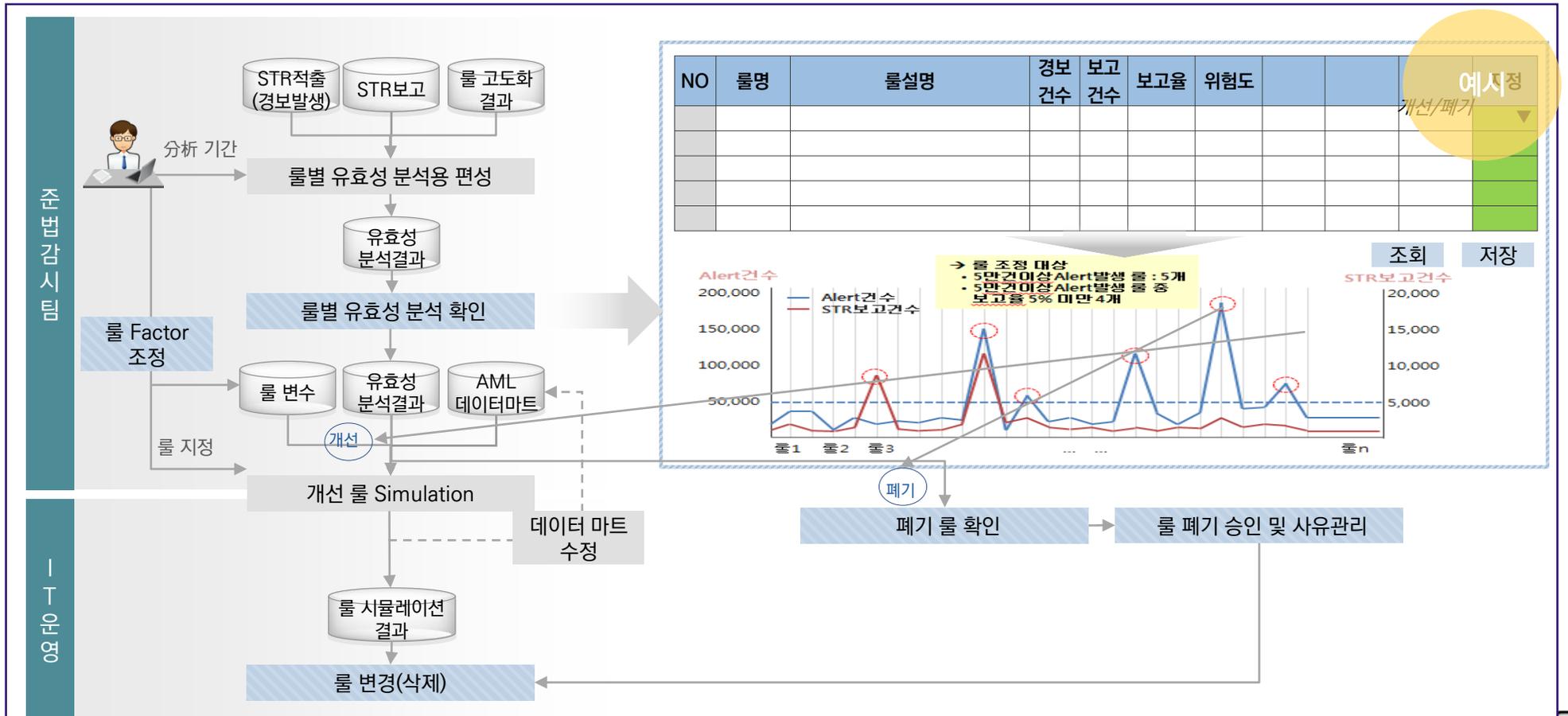




AML : TMS 유효성 검사

STR/CTR 룰 모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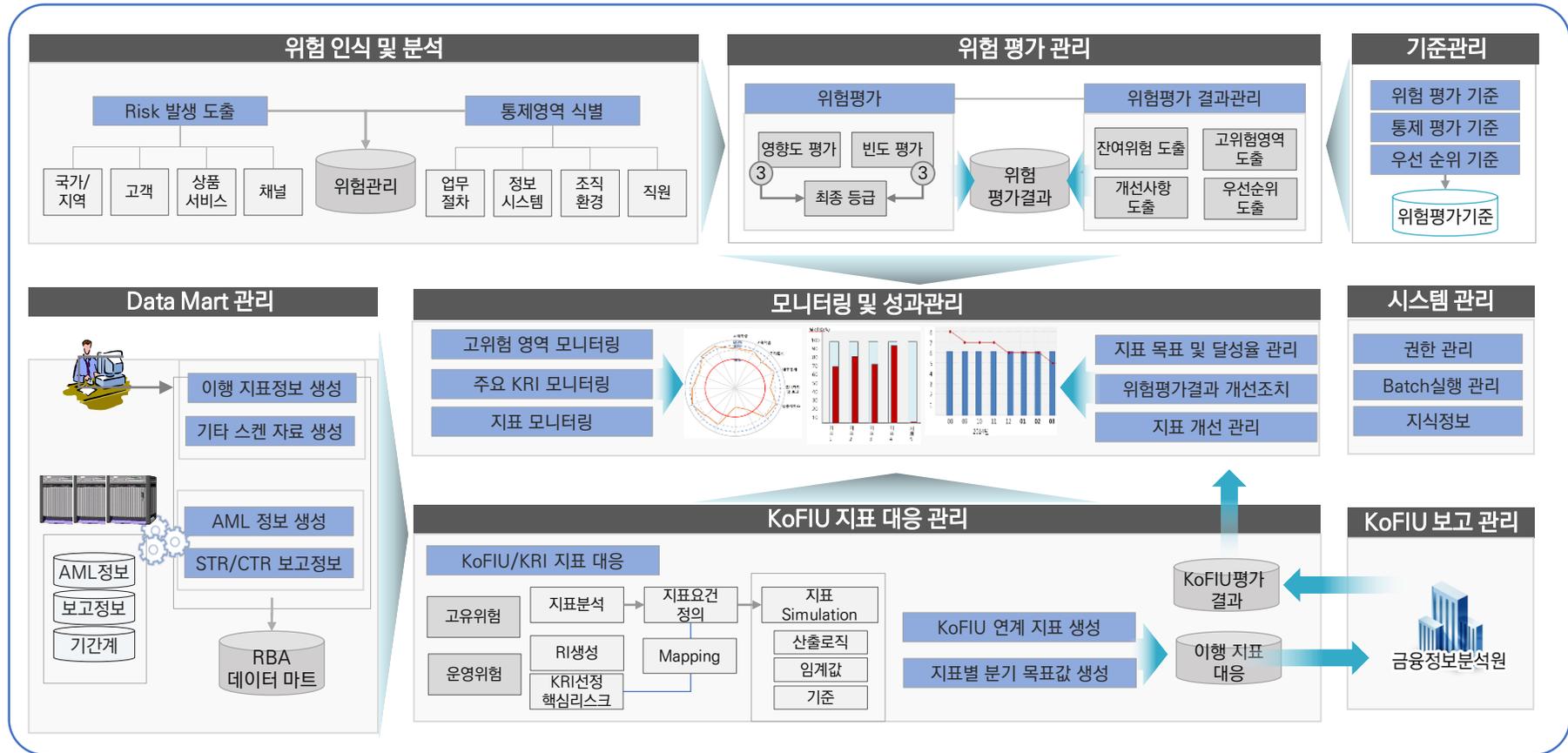
- 룰 별 Alert건수와 STR보고건수를 분석하여 기존 룰 개선 대상 및 폐기 대상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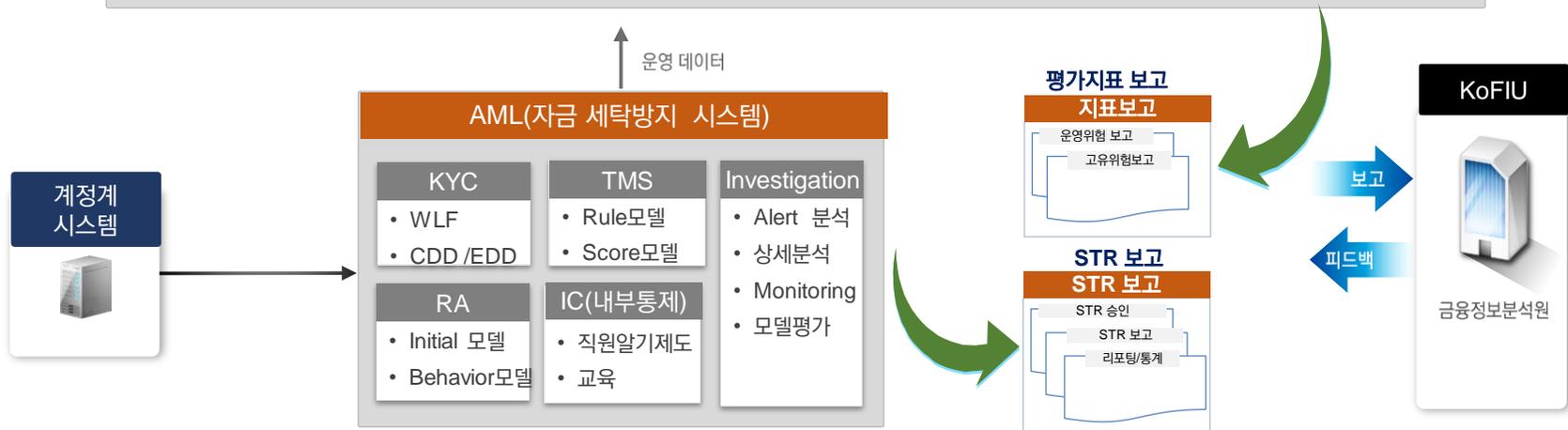
RBA : 시스템 구성도

RBA 시스템은 위험인식, 위험분석, 위험평가, 잔여위험, 개선경감활동, 모니터링, KoFIU 지표 관리, KoFIU 지표보고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BA - 위험 평가 기능 체계





RBA : 위험평가 모델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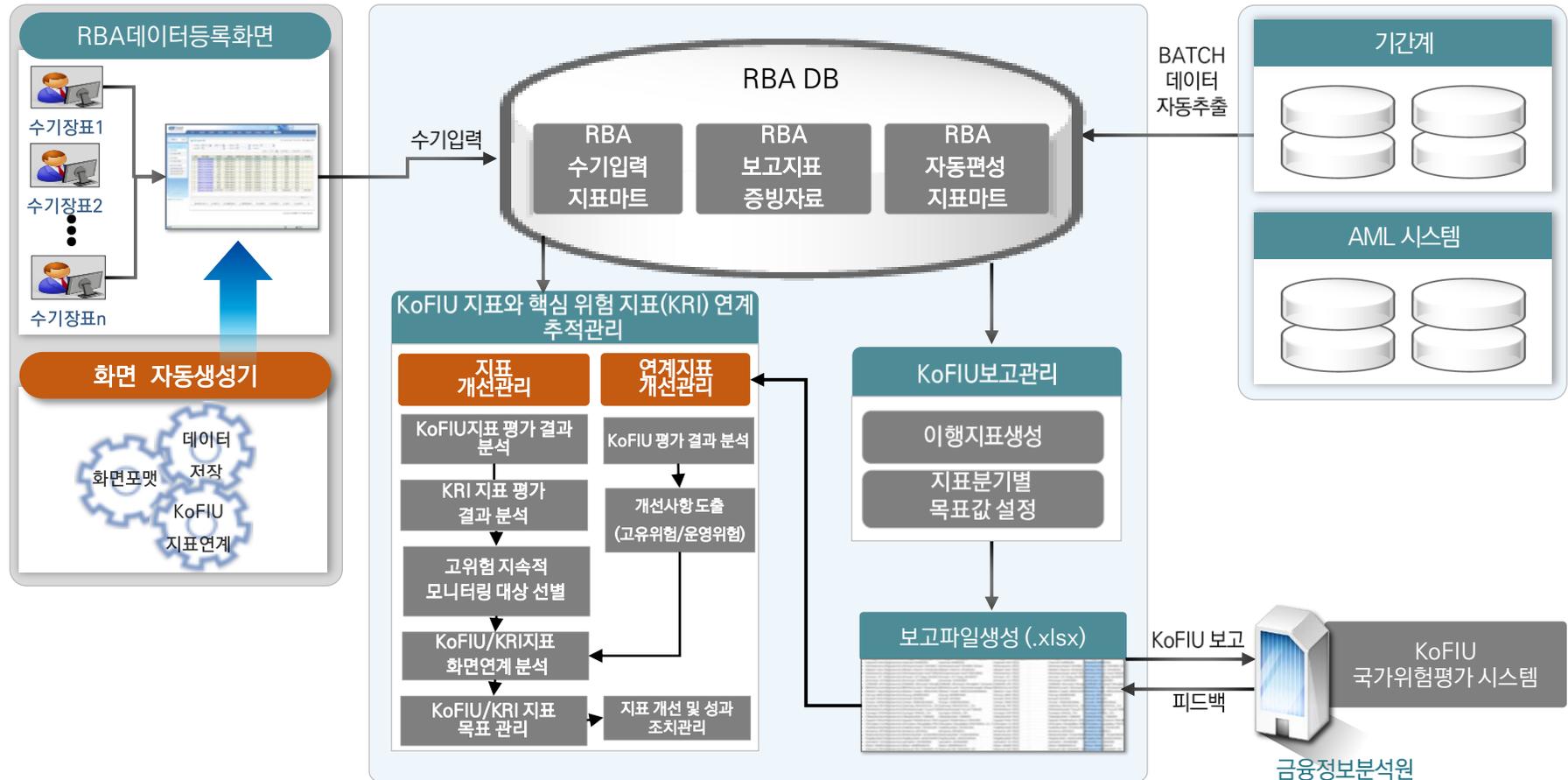
RBA 처리 지침에 따라 전사 자금세탁 위험 평가는 ML/TF 위험을 식별하고 내부통제 항목별 평가하여 결과를 산출합니다.





RBA : KoFIU 지표 보고 연계

KoFIU의 이행평가 지표에 대한 보고를 위해 전사적인 자금세탁관련 위험 지표를 도출하고 관리 및 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기 데이터의 경우 전산화를 지향하고 전산 Data의 경우 기간계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RBA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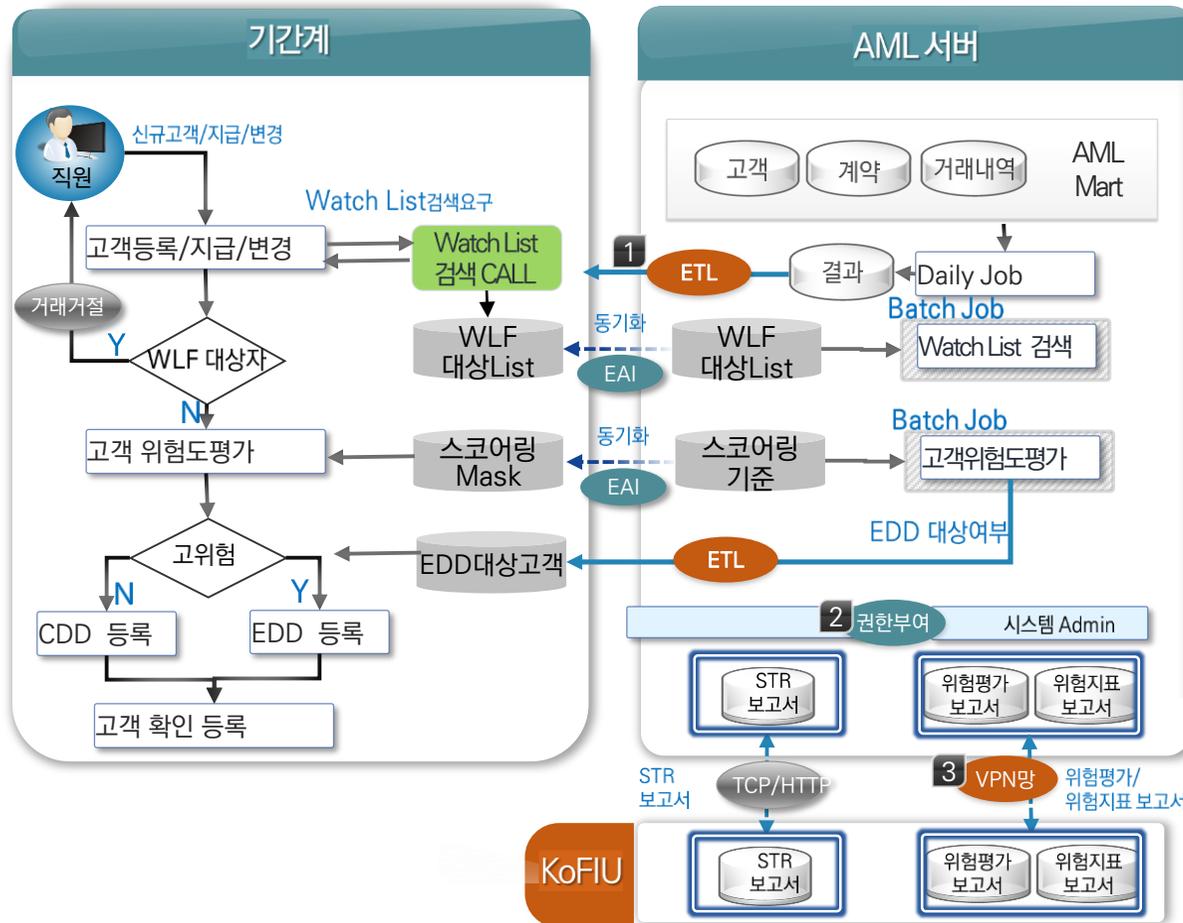


금융정보분석원





공통 : 기간계와 AML 서버와의 인터페이스 방안



인터페이스 특징

1 Daily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안

- Watch List 검색내역, 스코어링 결과, EDD 등록결과 포함
- 대상 : 정보변경 고객

2 AML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안

- DB계정 분리에 따른 AML테이블 접근 권한 부여

3 KoFIU 인터페이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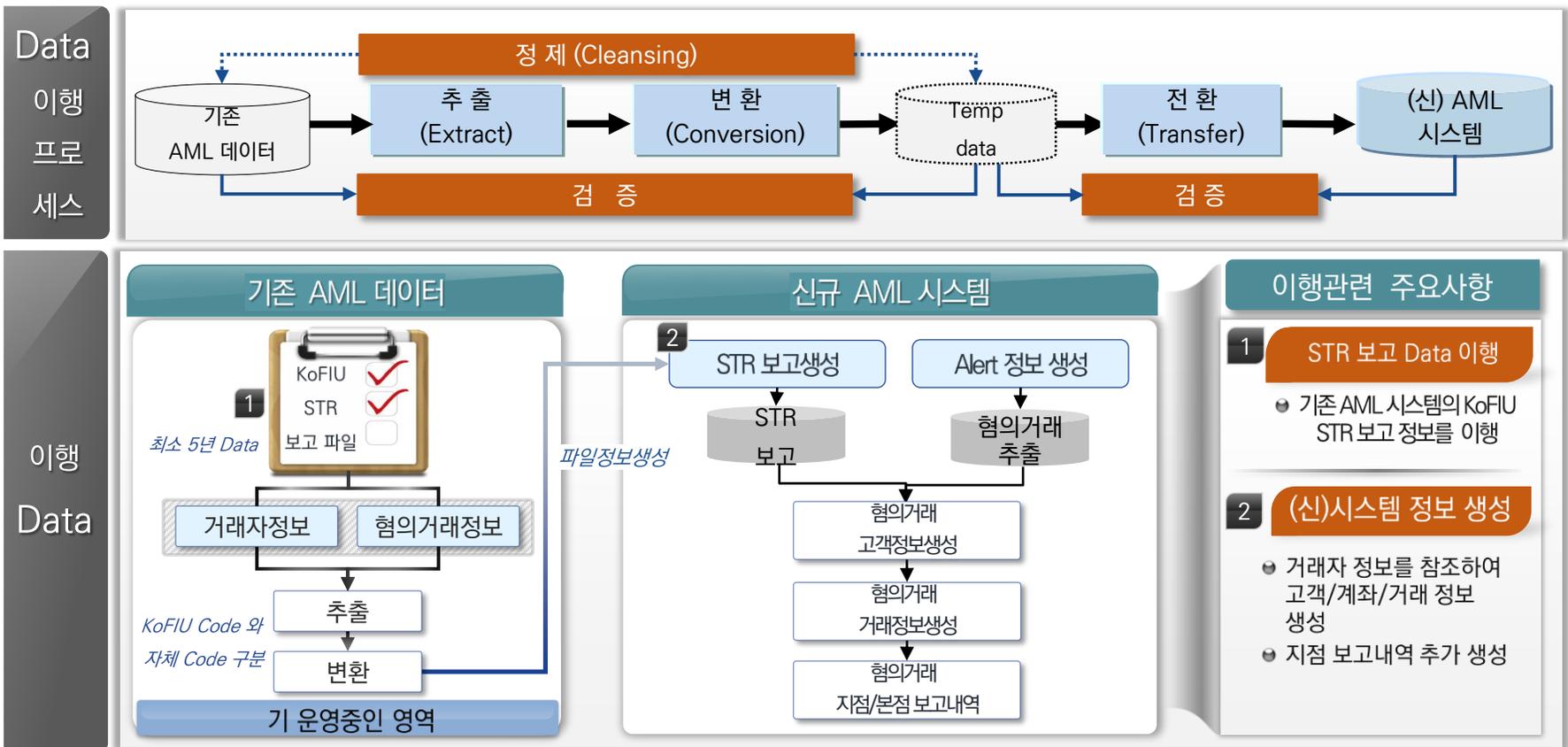
- VPN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정보 보고용 인터페이스 활용





공통 : 기존 AML/RBA 데이터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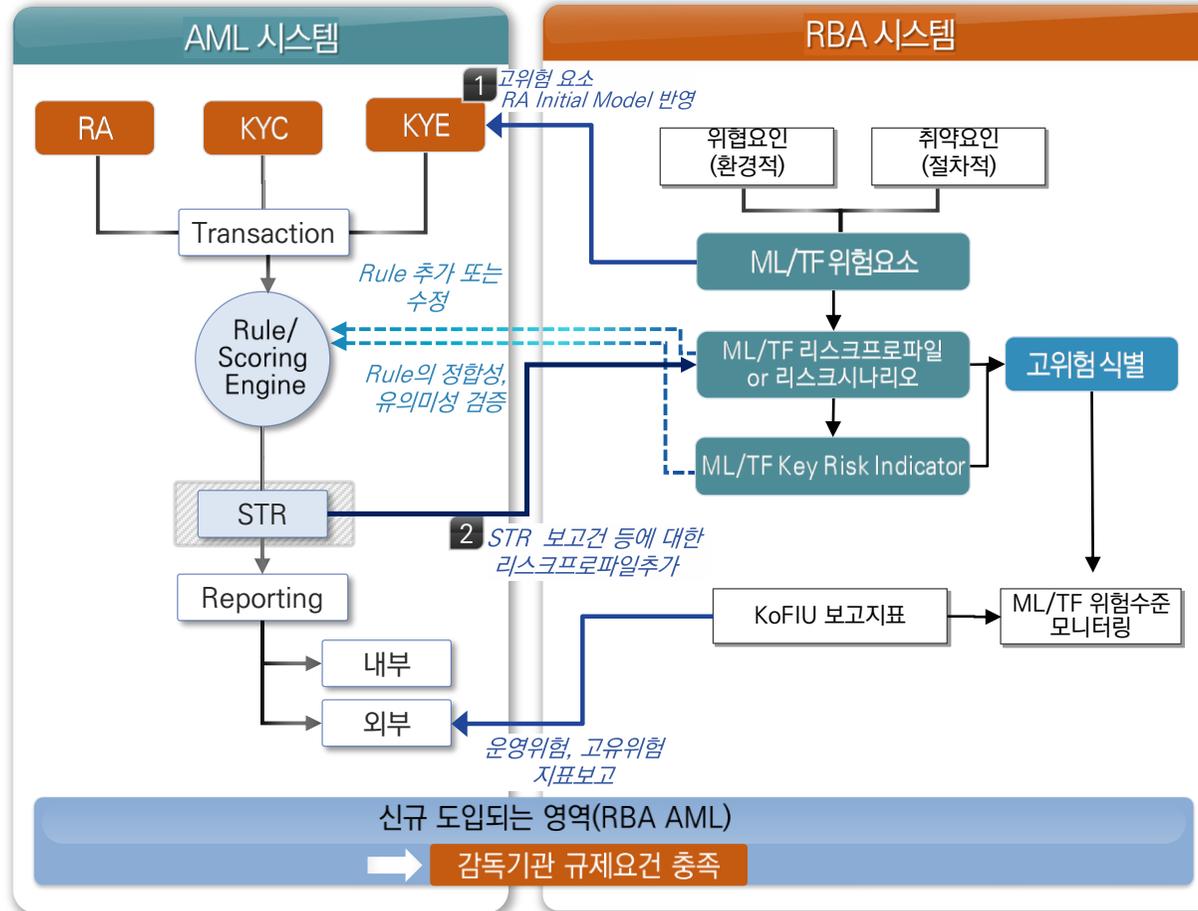
기존 AML 데이터 (STR 보고자료 및 룰 시나리오 정보) 를 데이터 이행하여 5년 이상 통합 보관 합니다.





공통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내부 연계

RBA(위험평가 시스템) 결과를 AML시스템으로 반영하고, 전사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도화는 상세 요건을 받아 진행합니다.



연계 관련 수정사항

- 1 위험평가 결과 AML 반영**
 - 위험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고/중/저)를 AML 시스템 KYC, STR 로 항목연계
- 2 AML 고도화 수정사항**
 - 전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도화 화면 수정사항 반영
 -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교육시스템 개선
 - 기타 전사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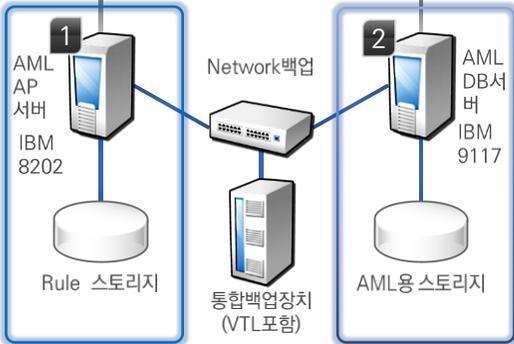


공통 : 목표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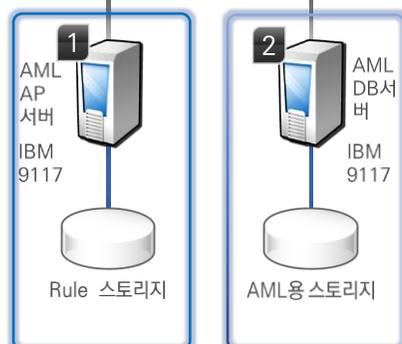
제안시스템은 고객사 기존 AML 시스템 HW/SW 환경에 상관없이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구성도

운영계



개발계



예시

소프트웨어 구성도

1 AP 서버 * 1대

WEBWAS	Jeus
AML/RBA 솔루션	RBAAML.PRISM
APM	Jemifer
서버보안	SGARedCastle
패스워드관리	SecureGuard
SSO	WiseAccess
OS	AX

2 DB 서버 * 1대

DBMS	DB2
ETL	-
DB암호화	CubeOne
데이터백업	Networker
DBReorg	Norad
DB접근제어	DBSafer
OS	AX

3 개발AP서버 * 1대

WEBWAS	Jeus
AML/RBA 솔루션	RBAAML.PRISM
서버보안	SGARedCastle
패스워드관리	SecureGuard
SSO	WiseAccess
OS	AX

4 개발DB 서버 * 1대

DBMS	DB2
ETL	-
DB암호화	CubeOne
데이터백업	Networker
DBReorg	Norad
DB접근제어	DBSafer
OS	AX



사업수행 일정 (A 캐피탈 실 사례)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6개월(컨설팅2.5개월 6MM, 구축 3.5개월 18MM)동안 수행하여 위험기반접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정	M1	M2	M3	M4	M5	M6		
	업무	컨설팅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
AML고도화/ RBA위험평가체계	RBA기반으로 AML고도화						안정화	
	RBA기반 위험평가 체계 구축							
KoFIU 보고				GAP분석	요구사항 분석/설계	개발 및 TEST		통합테스트
TMS				GAP분석	요구사항 분석/설계	개발 및 TEST		통합테스트
위험평가관리 구축				GAP분석	요구사항 분석/설계	개발 및 TEST		통합테스트
KoFIU 지표대응				GAP분석	요구사항 분석/설계	개발 및 TEST		통합테스트
마트 구축				데이터마트 추출 & 적재		데이터마트 보완		통합테스트
Legacy 대응 개발				분석/설계		개발 및 TEST		통합테스트
교육								사용자/ 운영자교육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

AML/RBA
솔루션
설치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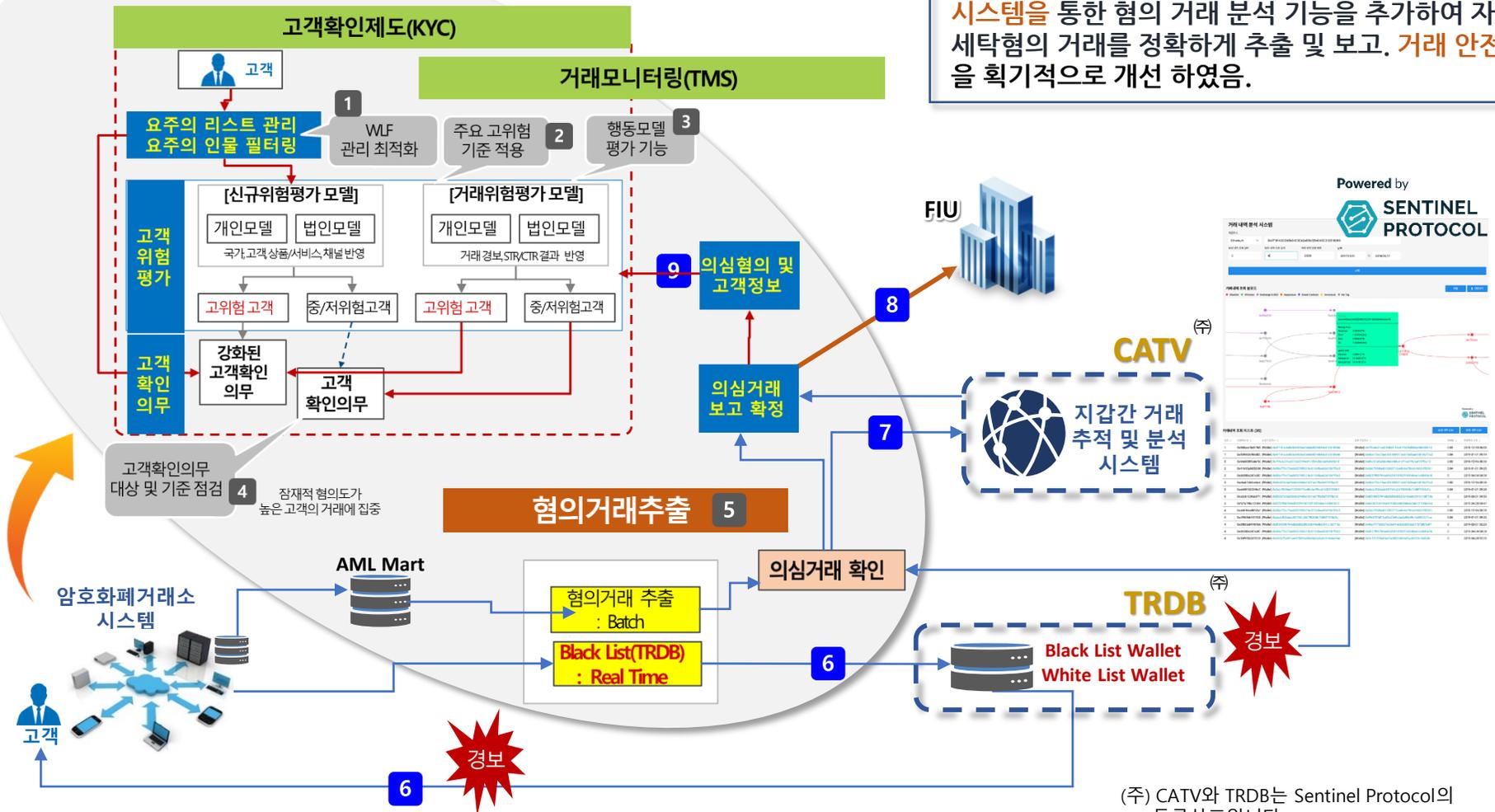
안정화





cryptoAML-PRISM™ : 가상화폐거래소 특화 솔루션

암호화폐 거래에 특화된 **Black List Wallet** 검색 및 Alert 제공 및 **가상자산(화폐) 유통 경로 추적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한 혐의 거래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자금 세탁혐의 거래를 정확하게 추출 및 보고, **거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주) CATV와 TRDB는 Sentinel Protocol의 등록상표입니다.





05

옥타솔루션 구축 방법론 - OIM



옥타솔루션의 Packaged Solution의 특징

진정한 Packaged Solution

옥타솔루션은 준법업무 솔루션이 빈번히 변경 되는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 업권을 통합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업권을 지원합니다. 업권별 특징 및 고객별로 다른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Configurator 기술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업권별/고객별 Customization을 최소화하고 click하여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진정한 의미의 Packaged Solution을 완성하였습니다.

집단지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는 Solution

옥타솔루션의 AML-PRISM과 RBA-PRISM은 지난 10년 간의 옥타솔루션의 구축 경험과 Know How 및 KPMG, EY, Deloitte와 같은 컨설팅회사, 그리고 40여 AML & RBA 구축 고객들의 업무에서 우려나온 아이디어와 효율성이 집약되고 내재화된 '집단지성에 의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향후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선된 사항들과 규제 변경에 따른 update를 Patch를 통하여 지원합니다.

빈번히 변경 되는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 유지보수 지원

옥타솔루션은 빈번한 규제/규정 변경에 업계최초이자 유일하게 업무 유지보수를 통하여 지원합니다.

- 시스템 유지보수** - 매 3개월 정기점검, 솔루션 bug fix 등
- 업무 유지보수** - KoFIU에서 규제/규정 변경 시 옥타에서 일괄 적용 patch 개발하여 무상 적용
단, 변경 적용을 위한 공수가 4MD 이상인 경우는 라이선스 비는 무상이나 적용을 위한 공수는 별도 협의
신규 규정 발표 시(예: 2016년 RBA 제도 신규 시행)는 별도 협의
(단, 기존 ORP 플랫폼 하에서 기능과 데이터 중복 최소화 하여 구현하므로 최소 비용으로 적용)
가동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새로운 버전이 출시 된 경우는 별도 협의.
- 고도화 요청 시** - KoFIU 기준이 아닌 고객사 사유로 고도화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협의



Why OIM (Octa Implementation Methodology)?

OIM 개발 배경

옥타솔루션은 과거 수많은 고객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을 발전 시켜왔으며, Packaged Solution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 1) 각 기능별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해당분야 전문가가 해당 부분을 상주가 아닌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투입되어 단기간 내에 맡은 공정을 완료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 2) 전체 일정의 Critical Path는 고객사에서 수행해야 하는 AML/RBA 데이터 매트 구축과 데이터 값에 대한 검증 및 Cleansing 그리고 기간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옥타가 투입한 엔지니어들이 본의 아니게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에게도, 옥타에게도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상주/전문 인력 적재/적소/적시 핀포인트 투입**이라는 OIM Package 기반 방법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OIM의 특징

- 1) 옥타솔루션이 Turn Key 책임 수행합니다.
- 2) Packaged Solution의 특징에 최적화하여 비상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적시 투입되어 해당 부분을 책임 수행합니다.
- 3) 구축 기간을 유사 업종 소스코드를 수정 개발하는 여타 경쟁사 대비 60%~70% 단축 시켰습니다.
- 4) 구축 기간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을 고객과 Share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 5) 솔루션이 잘 packaging되어 구조가 체계화 되었고 그로 인해 규제 변경에 대한 업무 유지보수가 용이해졌으며, 옥타가 Life time 책임 지원합니다.
- 6) 업종별 표준 Template를 제공하며 옥타 Configurator를 통해 Click 선택하여 구축합니다. (예: STR 룰 시나리오, 룰 시나리오별 STR 보고서 자동 작성, RA scoring Model, RBA 업종별 위험 정의 목록, 위험평가 로직, 내부통제 활동 목록, KoFIU 지표 계산 로직, 사용자별 권한관리 설정, 승인결재 설정 등..)
- 7) 다수의 고객사를 통해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E PG사, I, E 소액송금업, C 선불카드 등 평균 구축기간 약 1.7개월)
업무의 복잡도 및 고객의 협조에 따라 유동적이나 표준 템플레이트 보유 동일업종, 표준 템플레이트 적용 시 구축기간은 더 단축 됩니다.
- 8) 옥타솔루션은 특히 전자금융업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신규 적용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 템플레이트를 그대로 적용하여 단기간 내에 구축을 완료하고 적용하여 약 1년 정도 업무 경험과 Know-How 쌓인 시점에서 고객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고도화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9) 표준 템플레이트 보유 업종 :

은행/생보/손보/캐피탈/자동차할부금융/저축은행/자산운용/대부업/소액해외송금업/가상화폐거래소/PG업/선불카드/환전업



옥타솔루션 홈페이지 : www.octasolution.co.kr

고객지원→ 자료실→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https://www.youtube.com/watch?v=GY7kkqqF6O0&t=57s>

혹은 유튜브에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로 검색

06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금세탁방지 업무란?

-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
-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기능(Function)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Process)**
- **결과 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업무
- 금융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준법 업무 전 과정이 감사 대상이고 **과정이 문제가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징벌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준법 관련 **행위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준법 대응에 대한 일반적 오류

- ✓ 솔루션 구축을 위한 범위와 복잡도가 심각하게 **저평가** 되어 있음
- ✓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스킬이 잘 못 계산**되어 있음
- ✓ IT와 현업 인력은 본연의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로
- ✓ 구축 후 지속적인 변경 및 추가 요건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실상 포기**



금융회사의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금융 산업은 ‘규제 산업’임.

그만큼 지켜야 할 **규제/규정이 많고** 그만큼 **리스크가 상존**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0’화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리스크를 없애고 나면 또 다른 리스크가 항상 생겨나기 때문이고

상존하는 리스크 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음.

-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 미대응으로 **징벌적 벌금**을 받는 경우는;

- 1) 리스크가 **인지-통제-관리가 안 되어** 리스크가 실질적 사고 발생으로 연결 되는 경우
- 2) 규제 대응 프로세스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규제 대응 프로세스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근거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4) **내부자 혹은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에 가담**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신속히 ‘인지’하고 ‘통제’하고 통제된 상태로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빨리 인지-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제(조직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자동화 되고 알림 기능을 지원하는 ‘자금세탁방지 통합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징벌적 벌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잘 하는 법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잘 하는 방법은;

- 1) 규정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충실히 하고,
- 2) 수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 3)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수행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체계화 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자금세탁방지 업무 특성

- WLF, RA, CDD, EDD, STR, CTR, Reporting 등이 유기적으로 엮어져 있는 복합 업무
- RBA 또한 위험 도출, 분석, 평가, 경감계획수립, 경감활동, 평가, 개선 그리고 내부통제를 끊임없이 반복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발표한 고유위험지표 및 운영위험지표를 3개월마다 자가 평가를 해서 보고

- 전문 인력 확보

-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가끔씩 실수를 함.
- 익숙하지 않거나 비전문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임.
-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여 대상업체들은 대부분 업무에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움.
- 확보한다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감.

- 대응 방안, 숙련된 전문 인력 없이, 이런 복잡한 업무를 비용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 법규 준수를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단순화, 자동화하고,
- 행위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 및 그 기록이 자동적으로 보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미수행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담당자에게 알림을 주어서 빠짐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설계 구축 되어야 함.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문제점

- 많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간과하는 것이,**
 - 해야 할 것을 수행하고, 수행했다는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5년간 보관**하는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실수로라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
 - 또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정확히 **기한 내에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 수행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주어서 실수나 미기로 인한 문제를 없애는 것 등
- 예를 들면 ;
 - CDD 수행 후 3년이 되면 고객 정보 재 확인 및 RA 재 수행 및 근거 보존.
 - EDD 수행 후 1년이 되면 고객 정보 재 확인 및 RA 재 수행 및 근거 보존
 - 개인 실소유주 확인 및 WLF 수행 / 법인 25% 이상 주주 및 대표자 WLF 수행
 - WLF 실시간 수행 후 데이터 변경 시 마다 WLF 전체 재수행 (Batxh)
 - WLF 데이터 갱신 주기 및 갱신 기록 보관
 - **STR/CTR 검출 후 보고서 혹은 미보고 사유서 작성 후 처리 상황 모니터링**
(Dash Board에 STR/CTR 미처리 건수 표시 기능)
 - STR 검출 룰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수행 및 근거 자료 보관 등
- 감독당국 감사 시, **근거 기록이 없으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최근 들어 이러한 기록 및 보관의 문제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증가 (대만 메가뱅크 사례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I

-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최근 자금세탁방지 시장 확대에 따라 업무 전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공급업체들이 난립
대부분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나 경험**을 갖추지 않은 신생 업체 혹은 비전문 업체들
솔루션 또한 AML,RBA 전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부 기능만 지원**

- 솔루션 선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솔루션 업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솔루션 업체가 **세부 규정들**에 대한 이해 및 시스템에 반영 되어 있는지 여부
- 솔루션 업체가 **업종별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
-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숙지**하고 있고 시스템에 반영 여부
- 주요 기능들에 대한 자동화 여부 및 미수행 시 알림 기능 제공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체 (WLF, RA, CDD, EDD, STR, CTR, Reporting 및 내부통제, 위험평가, 지표 보고 등 RBA 전 기능 및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지 여부 -> 대부분의 업체는 부분 기능만 지원
- **기능이 아닌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지원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기록 및 보관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쉽게 확인 가능한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II

● 규제/규정의 지속인 변경에 따른 **업무 유지보수**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변경
- 변경이나 갱신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이면서 시기 적절히 대응이 가능한 **규정변경 유지보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 기존 금융 기관들의 경우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유지보수
- 상당히 많은 수의 고객들이 유지보수 문제로 기존 시스템을 걷어 내고 신 시스템을 구축

● **유지보수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

- 솔루션 업체가 전체 업무를 지원하지 않고 부분 솔루션만 공급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솔루션 제공업체가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갖추지 않고 적정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 솔루션 제공업체가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사업을 중단한 경우
- 솔루션 제공업체가 유지보수의 범위를 시스템 유지보수(Bug Fix 등) 로 국한하는 경우
- 도입된 솔루션이 **SI 개발로 구축되어 고객별로 개별 대응**해야 하는 경우
- 고객별 개별 대응을 위한 개발/수정 이력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축을 담당했던 인력이 이직하였거나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2008년~2011년 신규 구축 이후,
2016년부터 AML 고도화 및 RBA 구축 시,

**90% 이상의 고객이 시스템을
갈아 엮고 공급업체 변경!!**

WHY? -> 업무 유지보수



07

FATF 규제대응 이슈, 현안 및 대응 전략



VA & VASP를 위한 FATF 권고안 (2019.06)

주요 내용

- 가상(암호) 화폐를 재산·수익 등과 같은 **자산 개념**으로 간주
-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VA & VASP에 적용
 -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 해야 함. FATF 권고안 (INR. 15 Paragraph 2. 2019.06)

RBA – 위험 평가,분류,경감활동,내부 통제, 운영위험/고유위험지표 보고 등

기준 AML(사람/계좌/화폐 중심) – KYC-RA, CDD/EDD, WLF, STR/CTR & Reporting



VASP AML(지갑/코인 중심) – KYW-RA, Black List Wallet, STR/CTR(지갑,거래소 간 거래 추적/분석)

– Travel Rule 적용

자산(코인)이 주인을 바꿔가며 ‘여행’하는 과정 내내 돈을 소유하고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원과 ‘여행 목적’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확인해 요청 시 감독 당국에 제공

1. 보내는 사람/기관 이름
2. 보내는 사람/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암호화폐 지갑)
3. 보내는 사람/기관의 신분을 관할 감도 당국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생년월일 포함)
: 물리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승인번호와는 무관) 등
4. 받는 사람/기관 이름
5. 받는 사람/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암호화폐 지갑)





기타 사항

1. VASP 인/허가 제도 도입
2. 거래소간 이동 시에도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정보 및 거래 내역을 기록 보관
3. 사법당국이 요구 시 제공해야 함
4. 1년간 도입 유예, 2020년 6월 의견 수렴 후 권고안 한차례 수정 예정
5. VASP가 개인 사업자(Natural Person)인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등록이나 승인 후 거래에 참여
6. 다른 나라 VASP인 경우 규제 당국은 해당 국가에 VASP가 관여한 거래 정보를 요청 확인할 수 있음.
7. VASP의 주주구성, 경영방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바뀔 때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득해야 함.
8. 미등록 기관이나 비인가 업체가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적발
9. Mixer, Tumbler 등 자산의 출처와 행방을 모호하게 하는 장치를 쓰는 행위도 단속
10. VASP에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계정 동결 혹은 차단 권한 부여





Travel Rule

- ❖ 철학의 충돌 탈 중앙화, 익명성 vs. 공익 보호를 위한 규제
- ❖ 업계 반응 양분 FATF의 권고안은 무리수 (반발 & 저항) vs. 적극 수용 및 양성화
 - 암호화폐시장에 상당한 위협 (?)
 - 산업을 더욱 음지화 (?)
- ❖ 전지적 감독당국 시점 1993 금융 실명제 vs. 2019 Wallet 실명제
 - … 불구하고 규제를 통해 제도권 내로 유인, 양성화 성공 !
 -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여 규제를 방조/방임하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것
 - ➔ 나아가 정부가 불법을 조장/권장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
 - Travel Rule 준수를 위한 기술적 한계 극복 방법은 업계 스스로 찾아야 함.



FATF 권고안 특금법 개정안 추진 현황

구분	제윤경의원 案 (18.03)	전재수의의원 案 (18.12)	김병욱의원 案 (19.03)	김수민의의원 案 (19.06)
용어	가상통화	디지털토큰 (분장원장기술)	가상자산	가상화폐
금융거래 범위	가상통화와 금융자산간 교환 거래	좌동	좌동 + 가상자산간 거래 등	가상화폐와 금융자산간 교환 거래
취급업소 정의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	좌동	좌동 + 송금(Transfer)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
신고의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좌동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 직권말소	X	X	O	X
신고유효기간	X	X	O	X
미신고 영업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형사처벌	과태료
거래거절 의무화	- 재량적 거절 (자금세탁 위험성 특별히 높은 경우) - 신고의무 불이행	없음	- 의무적 거절 (신고의무 불이행, 시정명령 미이행, 검사방해등)	- 재량적 거절 (자금세탁 위험성 특별히 높은 경우) - 신고의무 불이행
고객확인사항	일반적 확인사항 + 예치금 분리관리, 정보보호인증 획득	일반적 확인사항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일반적 확인사항 + 예치금 분리관리, 정보보호인증 획득 등	일반적 확인사항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부칙	시행시기 : 3개월	시행시기 : 6개월	시행시기 : 12개월 기존 취급업소 : 법 시행 이후 6개월내 신고	시행시기 : 19.7월



특금법 입법안에 대한 이슈 포인트 및 전망

- ❖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 의무화 -> 특금법에서는 제외 시행령에서 제정
 - > 가상계좌 발급 및 이용 기준 불명확 -> 시행령에 발급 기준 포함
 - > FATF 가이드가 아니며 전세계 유일한 제도 vs 타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좋은 제도

- ❖ ISMS 보안 인증 의무화 -> 직권말소 6개월 유예
 - > 인증기간 및 고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
 - > 타업권 특금법과 형평성
 - > ISO 27001 ?

- ❖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 및 신고 유효 기간
 - >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관한 집중 및 진입장벽

중국 시진핑 2019.10.26.

블록체인 기회 잘 활용해야..
중,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도권 쥐어야..

가상화폐 금지-> 새로운 접근 시작
CBDC 발행

USD 기축 통화에 대한 우려
4차산업 패권 싸움에서 주도..

-> 비트코인 급등!

용어

	암호자산 /가상통화
	토큰 /디지털자산
	가상통화 => 암호자산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통화

IFRS 규정

업권법



FATF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정부 및 블록체인 업계의 역할

정부의 역할

- 블록체인 이슈에 대한 컨트론타워의 주체 및 역할 정리
- 법령 개전 이전 대응을 위한 해석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불법 행위에 개한 사전 단속 규정 공표 및 단속
- 민간기관을 선도하는 적극적 대응
- 정부 연구결과의 공개 및 토론
- 특금법 이외 관계 법령 개정의 동시 검토 및 진행

블록체인 업계의 역할

- ❖ 관련 단체간의 경쟁 지양 및 협력 -> 통합(?)
- ❖ 대 정부 소통 창구 일원화
- ❖ 세부 분야별 전문적 연구의 진행
- ❖ 구체적 대응 모델 제시
- ❖ 샌드박스 등을 통한 검증
- ❖ 특정 사업이나 업체에 치우치지 않은 포괄적 의견 제시

핀테크협회 블록체인 분과

한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

한국 블록체인 협회

한국 블록체인 협동 조합



1.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

- 권고안의 시행까지 일정 기간 소요
 - 권고안 자체의 1년간 유예, 2020년 6월 의견 수렴 후 한 차례 수정
 - 국내 법제화까지 시간
- 그러나 대세/방향성은 확정, FATF가 의견 수렴한다고 해도 최종 권고안의 대폭 수정은 예상하기 어려움.
 - > 미준수 시, 인허가 문제 및 징벌적 벌금, 강제 퇴출 등 강력한 규제 예상
- 따라서 AML/RBA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적용 가능한 것 부터 구축

2. 업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 VAMS(가상계좌 관리 시스템)
- AML-FDS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해킹 혐의거래 분석 시스템)
- 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관련 협회 및 대표사간 **컨센서스를 통한 준수 방안, 절차, 표준 설정** 등이 필요

-> **규제 대응 글로벌 표준 모델 확립 및 보급**

-> **FATF 규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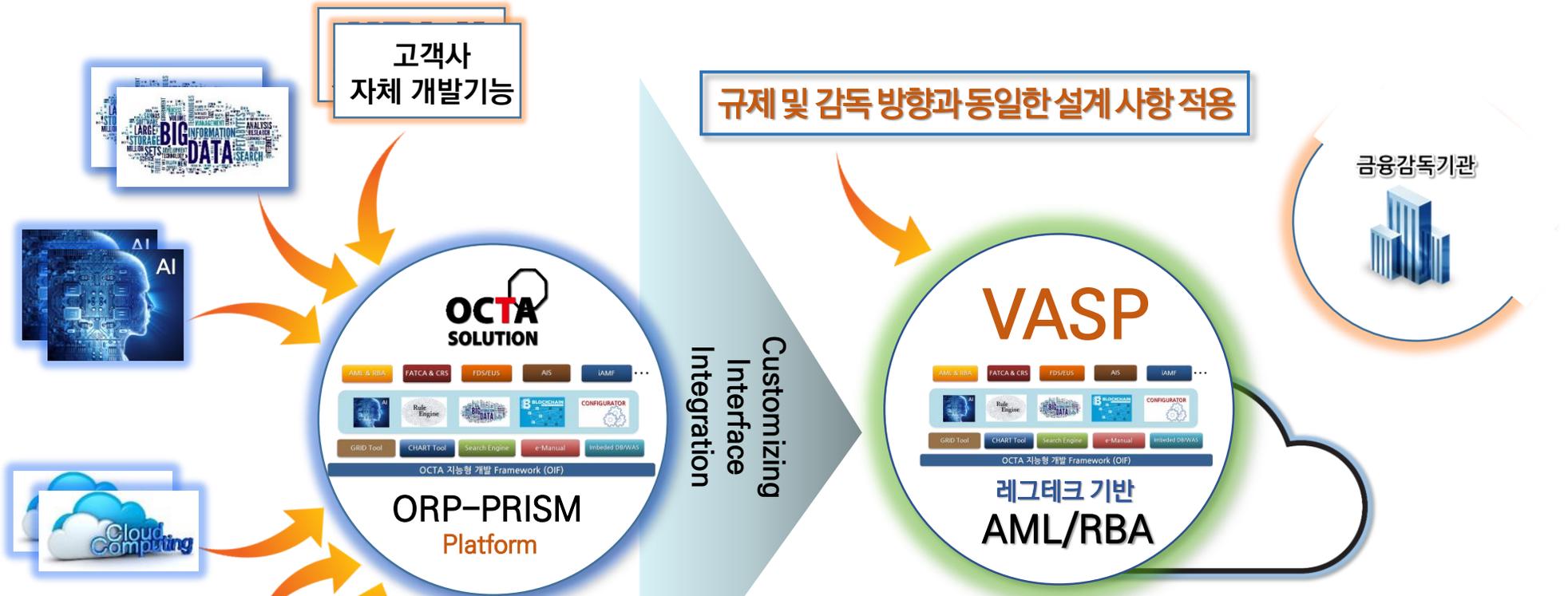


08

옥타솔루션 특징점



레그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중심 회사



ORP (레그테크 기반 금융 컴플라이언스 플랫폼)를 기반으로 컨설팅사들 및 수십여 고객사들의 '경험 및 Know-How' 내재화를 통하여,

- 규제 준수율을 제고하고,
- 자동화 및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현업 및 IT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 철저한 업무 유지보수 지원으로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 엮는 상황을 제거하여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통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옥타솔루션을 선택한 이유

업계 유일의 VASP 특화 검증된 토탈솔루션

- VASP 2개사 구축 경험 및 노하우
- 기존 금융기관 적용 사례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
-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과 교류 및 협업을 통한 기술 내재화
 - > 센티넬 프로토콜, 수호 등
- 최적화 RBA 지원 : 최적화 된 위험평가, 내부통제 및 KoFIU 지표 보고

감독 기준 맞춤형 솔루션

- 감독 기준 맞춤형 솔루션으로 높은 규제 준수율 유지
- fool-proof (알림) 기능 제공으로 담당자 실수 방지
- 이행 근거 기록/자료 자동 보관 및 Audit Traceability 지원
 - > 감사 대응 용이

레그테크를 이용한 단납기 구축 및 운영 용이성

- Configurator를 이용한 구축 기간 단축
- 보고서 자동 작성 등 자동화 및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현업 & IT 생산성 향상 및 손쉬운 운영
-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전문업체나 고객사 자체 개발 기능들과 통합이 용이한 플랫폼 구조 (예, Chainalysis, FACTIVA etc.)
- any OS, RDBMS, WAS 지원

전문성 및 지속적 지원

- 30여 고객사, 컨설팅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재화한 레그테크 기반의 Packaged 준법 솔루션 전문 업체
- ORP를 이용한 지속적이고 용이한 규제 변경 대응 및 유지보수
 - > 법규 개정 시 빠른 패치 반영
 - > 최신 규제의 적시 적용
 - > 높은 규제 준수율 유지

업계 유일의 VASP AML/RBA 구축 경험 보유, 다양한 블록체인 업계 참여, FATF 권고안 및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반영, 글로벌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한 차세대 AML Architecture를 보유한 단납기를 지원하는 업계 유일의 VASP에 특화되고 검증된 '레그테크 기반 자금세탁방지 토탈 솔루션'





AML/RBA 솔루션 도입 시 고려 사항

“ AML/RBA 국제 규정 및 국내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정확성**, 업무담당자 **생산성** 향상,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 향후 **유사 제도** 확장 시 유연한 대응을 고려한

AML & RBA-PRISM™ 솔루션 ”



높은 규제 준수율 유지

정확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변경에 신속/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

감독검사 방향 및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한 정확한 규제 대응

- 국내외 규제 및 동향 분석을 통한 정확한 규제 대응
- 금감원 레그테크 포럼 참여 및 KoFIU RBA 4차 참여를 통한 높은 규제 이해도 및 시스템 반영
- 레그테크 기반 차세대 아키텍처 개발을 통한 선제적/전략적 대응

ORP(레그테크) 기반의 첨단 기능을 통한 정확도 및 생산성 향상

- ORP 플랫폼 기반의 packaging 기술을 적용한 구조화로 손쉬운 변경 및 운영 (IT 생산성 향상 및 실수방지)
- 실질적 Packaging 솔루션으로 타사 경험을 솔루션에 지속적 반영으로 고도화
- 협의거래 룰 시뮬레이션, 협의거래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 등 다양한 자동화 기능으로 업무 담당자 및 IT 생산성 향상
- 시스템 및 업무 유지보수 선제적 지원으로 변경에 신속하고 비용효율적 대응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징 및 업무 유지보수 지원 체계

- 지속적으로 변경 되는 규제/규정에 신속히/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화 된 솔루션
→ 2018년KoFIU 보고지표 업계 최초 변경 대응 및 고객에 선제적 유지보수로 대응 완료
- 옥타솔루션 개발연구소 업무 유지보수 지원 팀에 의한 신속한 선제적 대응
- ORP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제도 대응 시, 기능/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여 유연한 대응
- 옥타의 검증된 솔루션과 검증된 인력에 의한 철저한 납기 내 완수 보장

구축 후 전면 재구축 없는 확장성 및 유지보수 지원으로 투자보호 !





AML/RBA-PRISM™ 특징점

고객 및 컨설팅사의 경험이 내재화 된 검증된 솔루션

- ◆ 30여 고객사 경험 및 노하우 내재화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
- ◆ KPMG,EY,Deloitte 등 컨설팅사의 경험 및 Know-How 내재화
- ◆ 업계 최고의 납기준수율 (옥타 귀책 납기 지연 없음)
- ◆ 고유의 구축 방법론을 통한 단납기 (1~4개월)
- ◆ 고객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업종별 표준 모델 및 특화 솔루션 보유

다양한 자동화 및 실수방지 기능을 통한 현업 및 IT 생산성 향상

- ◆ 혐의거래 추출 룰/보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기능
- ◆ 혐의거래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
- ◆ 수가지표 입력화면 편집/생성기 제공
- ◆ 다양한 실수 방지 알림 기능 및 업무처리 자동화로 실수예방
- ◆ Dash Board를 통한 Task 알림 기능

업계 최고 자동화율

실질적 업무 유지보수 지원

- ◆ 제품 개발연구소 내에 업무 유지보수 팀 배치로 실질적 업무 유지보수 지원
- ◆ 규제 요건 변경 시 patch 개발하여 선제적 대응 (예: 2018년 KoFIU 지표 변경 대응)
- ◆ ORP(OCTA RegTech Platform) 기반 유연한 확장성 및 Package Module화를 통한, 업무 요건의 변경 시 프로그램수정 최소화로 유지보수 용이성 제고

유연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 ◆ ORP 기반의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사 자체개발 혹은 전문 업체 솔루션을 ORP 기반으로 통합
- ◆ 신규 규제 대응 시, 기능이나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기존 시스템 확장 대응.





핵심역량 - 전제품 독자 기술로 개발

■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도

- 레그테크 및 차세대 AML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도
- RA2, FDS, TBML, CLOUD 등 '차세대 AML' 구현을 통한 지속적 R&D로 고객 준법 솔루션 투자 보호
- AI, 빅데이터, CLOUD, RULE, WEB Scrapping 등 최신 IT 기술 적용으로 비용 효과적 솔루션 구현

■ 자체 개발한 RegTech Platform: ORP

- 준법 업무에 최적화 룰엔진 및 프레임워크 적용
- 복잡한 분석 업무 단기간 내 구현
- 전 제품 동일 플랫폼 상에 구현하여 확장 용이 및 데이터&기능 중복최소화

■ 솔루션 모듈화 기술 및 Configurator

- 업종별/고객별 기능 구성 시 옥타 Configurator 사용으로 **구축 기간 단축** (경쟁 타사의 60%~70% 수준)
- 시나리오 추가 / 변경 및 **유지 보수 용이**
 - 변경 없는 엔진과 상황 변화나 고객 요구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손쉽게 변경 및 관리할 수 있음
 - Configurator를 이용한 기능 구성/권한 등의 손쉬운 변경



■ 실질적 유지보수 지원 체계

- 각 제품별 최고 전문가들로 유지보수/지원 팀 구성
- 외주 인력 투입시 1~2주간 해당 분야 교육
- 프로젝트 수행 팀에 대한 전화/방문 지원
- 규제/규정 변경 시 즉각 대응

고객 만족도 제고

■ 업무 자동화율 제고 및 전자 매뉴얼 제공

- 준법 담당자 잦은 변경 및 준법담당자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를 위한 업무 자동화율 제고
 - 각종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등
-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 및 프로세스를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관리

■ 고객 사례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 및 전문인력

- AML/RBA 28, FATCA/CRS 22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 지연 사례 없으며, 조기 구축 완료
- 선행적 업무 유지 보수 및 지원 체계

옥타솔루션의 전제품은 고객을 통해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고객에게 드리는 가치

✓ 투자 보호

지속적인 **글로벌 준법 동향 파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규제나 변경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과, 데이터 및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여 **동일 프레임워크** 하에 기 구축하여 사용 중인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존 투자 보호

✓ 위험 감소

철저한 규정 분석 및 검증을 통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 준수도** 및 **롤&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 기능 및 Risk Visualization을 통한 **조기 인지 및 통제**로 위험 최소화
옥타와 컨설팅 파트너(KPMG,EY,Deloitte 등) 및 **30여 고객사의 경험과 know-How가 내재된 검증된 솔루션**

✓ 현업 및 IT 생산성 향상

레그테크, RPA,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업무를 **자동화/단순화**하고, **“실수방지 기능”** 구현으로 사고 예방
준법업무에 최적화 된 **롤엔진 적용** 및 고도화 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Batch Job 성능 개선**으로
현업 및 IT 생산성 획기적 향상

✓ 유지보수 용이성 향상 및 비용절감

Configurator, 롤 코딩, 임계값 현업 수정/관리 기능, 입력 화면 자동생성 기능 구현을 통한
신규 구축 및 변경 소요 기간 단축으로 **‘업무 유지 보수’ 용이성 향상 및 비용 절감**



2008년~2011년 신규 구축 이후,
2016년부터 AML 고도화 및 RBA 구축 시,

**90% 이상의 고객이 시스템을
갈아 엮고 공급업체 변경!!**

WHY? -> 업무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엮는 낭비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The RegTech Company'

Thank You!

영업 강 인구 부장

010-2461-2346 igkang@octasolution.co.kr

사업협력 및 제휴 김종영 전무

010-5246-8009 jykim@octasolution.co.kr



(주) 옥타솔루션

ADDRESS _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1013~14호 (양평동5가,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PHONE _ (02) 2062 - 5078

FAX _ (02) 3453 - 3037

HOME PAGE _ www.octasolution.co.kr